

# 金融機關 合併에 관한 租稅政策方向

1997. 12.

金 珍 洙 · 金 裕 燦

**Kipf** 한국조세연구원

## 序 言

국내 금융산업은 對外開放과 自律化의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대외개방과 금융자유화로 인해 국내금융기관간 그리고 국내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IMF의 자금지원을 받게 되면서 IMF로부터 金融産業의 構造調整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銀行을 비롯한 우리나라 金融機關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合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금융기관이 합병을 통한 대형화로 規模의 經濟나 範圍의 經濟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대기업의 부도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화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金融機關의 合併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主要 外國들의 금융기관 합병동향을 살펴보면 美國은 1980년대 후반에 금융자유화 과정을 통하여 가장 많은 합병빈도수를 보여주었고 합병을 통한 자산취득 규모별로는 1990년대에 가장 왕성한 합병활동을 보였다. 반면 日本은 1970년대 초반에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의 제정에 힘입어 활발한 은행합병이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 소강상태를 거친 후 1990년 초반에 다시 합병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또 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반이 가장 합병이 왕성하였던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기업의 합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所有權의 分散 및 政府의 經營統制 등으로 인해 합병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합병 또는 타금융기관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金融

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합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997년 1월에 이 법률은 「金融產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로 전문개정되었음)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 의해 투금사의 은행전환 등이 한 차례 이루어진 후 추가적 합병이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금융기관의 합병은 金融規制 緩和와 業務領域 調整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될 競爭深化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金融機關의 合併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의 현행 金融機關 合併關聯 稅制를 주요 외국의 관련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가 안고 있는 問題點을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改善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珍洙 博士와 金裕燦 博士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本院의 李基榮 博士와 玄鎮權 博士, 財政經濟院 法人稅制課의 여러분 그리고 익명의 論評者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그리고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힘써 준 本 研究院의 金正絃 主任研究員, 姜美貞 研究員, 崔祉香, 張貞順 研究助員, 그리고 교정을 맡아준 출판과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에 담긴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적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1997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金仲秀

# 目 次

I. 序 論 .....	9
II. 金融機關 合併의 理論과 既存의 研究 .....	12
1. 規模의 經濟 .....	12
2. 範圍의 經濟 .....	17
3. X-效率性 .....	19
4. 政策的 示唆點 .....	22
III. 金融機關 合併의 現況 및 必要性 .....	24
1. 現 況 .....	24
2. 合併의 必要性 .....	25
3. 合併의 障礙要因 .....	32
IV. 金融機關 合併關聯 稅制 .....	36
1. 合併關聯 稅制 .....	37
2. 金融機關 合併에 관한 稅制支援制度 .....	49
V. 外國의 金融機關 合併關聯 課稅制度 .....	51
VI. 現行 金融機關 合併關聯 稅制의 問題點 및 改編方向 ...	58
1. 金融機關 合併關聯 租稅政策의 基本方向 .....	58
2. 現行 金融機關 合併關聯 稅制의 問題點 및 改編方向 .....	62

Ⅶ. 要約 및 結論 .....	79
參考文獻 .....	85
〈附錄 I〉 企業合併關聯 會計理論 .....	92
〈附錄 II〉 外國의 金融機關 合併 現況 .....	100
〈附錄 III〉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	116
〈附錄 IV〉 合併會計準則 .....	128

## 表 目 次

〈表 Ⅲ-1〉 國家別 上位 5大 市中銀行의 平均資產規模 比較 (1995年) .....	27
〈表 Ⅲ-2〉 金融機關의 營業店當 人口 및 GNP 比較(1992年) .....	27
〈表 Ⅲ-3〉 國內外 銀行의 收益性 比較 .....	28
〈表 Ⅲ-4〉 5大 市中銀行과 5大 企業集團의 平均資產規模 推移 .....	29
〈表 Ⅲ-5〉 6大 市中銀行의 不實與信 現況 .....	30
〈表 Ⅲ-6〉 電算關聯 投資費用의 比較 .....	32
〈表 V-1〉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國際比較 .....	53

## 圖 目 次

[圖 Ⅱ-1] 配分の 非效率性과 技術的 非效率性 .....	20
[圖 Ⅳ-1] 金融機關 合併關聯 稅目 .....	36

## 附表目次

〈附表 I - 1〉 持分풀링法과 買收法の 比較 .....	96
〈附表 II - 1〉 美國의 銀行, 銀行機關 및 銀行店鋪數 推移 .....	101
〈附表 II - 2〉 美國의 資產規模別 銀行數 推移(經常價格 基準) ...	102
〈附表 II - 3〉 美國의 上位銀行 資產占有率 推移 .....	103
〈附表 II - 4〉 銀行의 進入과 退出 推移 .....	104
〈附表 II - 5〉 美國의 銀行合併 推移 .....	105
〈附表 II - 6〉 1990年代의 大型銀行合併 .....	106
〈附表 II - 7〉 主要 銀行合併의 費用節減效果 .....	107
〈附表 II - 8〉 複數銀行持株會社의 會社當 子會社 銀行數 推移 (1980~1993) .....	109
〈附表 II - 9〉 日本의 1968~1994年中 合併·轉換實績 .....	111
〈附表 II - 10〉 日本 金融機關數의 變動 推移 .....	112
〈附表 II - 11〉 日本 主要 金融機關 店鋪數(1995年末 基準) .....	112
〈附表 II - 12〉 日本의 主要 銀行合併 現況 .....	113
〈附表 II - 13〉 最近 유럽 銀行의 合併·買收 件數 .....	114
〈附表 II - 14〉 유럽의 外國銀行間 合併의 主要 事例 .....	115
〈附表 II - 15〉 유럽의 上位 10大 銀行 .....	115

## I. 序 論

金融産業의 對外開放으로 인해 국내금융기관은 외국의 대형금융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며 또한 金融産業의 自律化로 인해 특히 국내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다. 금융산업의 환경이 이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금융기관은 대출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부실자산이 누적되면서 財務構造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大型化가 필요한 이유는 실물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위자금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시장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어느 수준 이상의 자본규모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銀行業務의 國際化에 필요한 적정 자본규모를 달성하고 점포망, 전산투자, 전문성 등과 관련한 취약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도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달성하는 데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도 있으나 상호 보완적이거나 동질적인 금융기관간의 합병이 효율성 증대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합병에 대한 否定的 認識, 金融機關 所有權의 分散 및 政府의 經營統制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간 합병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91년에 한양투금이 보람은행으로 전업한 후 비은행금융기관인 금성투금과 합병한 사례 이외에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혹은 은행간 합병은 1976년 당시의 서울은행과 한국신락은행의 합병이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금융기관간 합병 또는 타금융기관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투금사의 은행전환 등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추가적인 합병이 시도되지 못하였으며 이 법률과 관련하여 합병의 인가요건, 합병시 세제혜택관련 조항의 實效性 등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金融產業이 國際化·開放化됨에 따라 금융산업 개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合併의 實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997년 1월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을 「金融產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로 전문 개정하였다. 이 법률은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뿐 아니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등 구조개선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합병을 통해 大型化와 構造改善을 이룩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세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金融機關의 合併에 대한 課稅는 대부분 일반기업의 합병에 대한 과세에 준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해 상당한 稅制支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금융기관 합병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합병을 위한 세제지원의 성격이 대체로 금융기관이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稅負擔 중의 일부를 減免하여 주는 것이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稅負擔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관련 세제지원은 金融機關 合併에 妨害要因으로 작용할 만한 조세제도상의 요소들을 정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성격의 세제지원이라도 제도가 잘 정비될 경우 현재보다는 어느 정도 합병에 有效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현재까지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이 분야

의 研究文獻을 分析하여 結果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金融機關 合併의 現況 및 必要性을 分析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金融機關 合併事例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Ⅴ장에서는 外國의 合併 現況과 合併관련 制度를 比較적 상세히 다루었다. 제Ⅵ장에서는 우리나라의 現行 金融機關 合併관련 制度의 問題點을 지적하고 改編方向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本 報告書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 II. 金融機關 合併의 理論과 既存의 研究

金融機關 중에서도 특히 銀行産業의 合併에 관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난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sup>1)</sup>. 은행산업의 합병에 관한 연구는 은행간 합병을 통한 大型化가 효율성 증대를 가져오는지, 만일 그렇다면 은행은 합병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점을 누림으로써 效率性을 제고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실제의 銀行 合併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그리고 X-효율성이 달성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합병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合併成果를 직접 분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銀行産業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그리고 X-효율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합병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고 이를 기초로 銀行間 合併에 대한 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 1. 規模의 經濟

銀行은 合併을 통해 대형화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서를 통합하고 점포를 정리하여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電算投資費用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預金業務와 貸出業務 등 은행업무에 있어서 대형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단위업무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이는 收益性 提高로

---

1) 본장에서는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銀行産業의 합병에 관한 연구만을 본문에서 다루었으며, 證券産業 및 保險産業의 合併에 관한 연구는 註에서 다루었음.

이어짐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은행은 합병을 통한 大型化에 의해 效率性을 提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는 生産量이 증대됨에 따라 平均費用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는 全體生産物에 대한 규모의 경제와 特定生産物에 대한 규모의 경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생산물에 대한 규모의 경제의 존재여부는 限界生産費를 平均生産費로 나누어 구한 값, 즉 費用의 產出物에 대한 彈力性에 의해 판단하게 되며 그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다<sup>2)</sup>.

$$S_N = \sum_{i=1}^N y_i \frac{\partial C(y)}{\partial y_i} / C(y) = \sum_{i=1}^N \frac{\partial \ln C(y)}{\partial \ln y_i}$$

여기서  $S_N > 1$ 이면, 각각 규모의 비경제,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규모의 경제하에 있다고 정의한다.

全體生産物에 대한 規模의 經濟 외에도 특정생산물에 대한 규모의 경제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特定生産物에 대한 規模의 經濟의 존재여부는 특정생산물의 한계비용을 평균비용으로 나누어 구한 값에 의해 판단하게 되며, 그 測定基準은 다음과 같다<sup>3)</sup>.

$$S_i = \left[ \frac{\partial C(y)}{\partial y_i} \right] / \left[ \frac{C(y) - C(y_{-i})}{y_i} \right]$$

여기서  $S_i > 1$ 이면, 그 個別品目은 규모의 비경제,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 규모의 경제하에 있다고 정의한다.

2) 여기서 C는 다품목비용, y는 N개의 생산물의 列벡터로서  $y = (y_1, \dots, y_N)$ 임.

3) 여기서  $y_i$ 는 i번째 생산물이며,  $C(y_{-i})$ 는 i번째 품목의 생산물이 0으로 대체된 列벡터임.

이상에서 설명한 규모의 경제가 은행산업에도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銀行產業의 費用函數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측정하여야 한다<sup>4)</sup>.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산출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여야 하는데, 銀行의 役割과 機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연구자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 產出物의 정의도 달라진다.

銀行은 투입물을 이용하여 산출물을 생산하는 일반 기업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Benston(1965)과 Berger-Hanweck-Humphrey(1987) 등은 預金計座數, 貸出件數, 業務處理量 등을 산출물로 간주하였으며, Schweitzer(1972)와 Clark(1984) 등은 收益規模를 산출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은행의 총비용으로는 人件費와 資本費用을 합한 영업비용이 이용되고 있으며, 投入要素價格으로는 1인당 인건비와 고정자본단위당 비용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銀行은 資金의 仲介機關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Horvitz(1963) 등은 預金規模를 산출물로 간주하였으며, Sealy-Lindley(1972) 등은 總收益資產을 산출물로 간주하였고, Lawrence(1989) 등은 예금 및 수익자산의 총액을 산출물로 간주하였다<sup>5)</sup>. 이와 같은 연구에서 銀行의 總費用으로는 인건비와 자본비용을 포함하는 비용, 예금이자, 차입금이자를 합한 금액이 이용되고 있으며, 投入要素價格으로는 1인당 인건비, 고정자본단위당 비용, 예금과 차입금 단위금액당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이 이용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조사한 Berger, Hunter and Timme(1993)에 의하면 銀行合併에 의한 費用減縮效果는 대체로 중규모의 은행이 대규모 혹은 소규모 은행보다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銀行產業의

---

4) 1980년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Cobb-Douglas 費用函數를 이용하여 은행의 업무별 비용함수를 추정하였음. 그러나 그 후 Cobb-Douglas 비용함수는 다품목 생산물의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트랜스로그(translog) 費用函數나 Box-Cox 費用函數가 많이 이용되었음.

5) 각 견해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김인기·김장희(1991) 참조.

平均費用函數는 비교적 넓은 U자형 곡선으로서 그 최저점은 총자산 10억달러 이하의 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총자산 1억달러 이상의 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에 7,500만달러에서 3억달러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Berger et al.(1987), Ferrier and Lovell(1990), Berger and Humphrey (1991), Bauer et al.(1992)]. 또한 총자산 10억달러 이상의 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U자형 곡선의 최저점은 20억달러에서 100억달러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Hunter and Timme(1986, 1991), Noulas et al.(1990), Hunter et al.(1990)].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해 McAllister and Mcmanus(1993)는 平均費用函數가 U자형이 되는 트랜스로그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를 사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대신 非母數推定方法(nonparametric estimation procedures)을 사용하였다. 實證分析의 결과에 의하면 소규모 은행에서는 규모의 비경제가 발견되었으며, 總資產 5억달러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이상 규모의 은행에서는 平均費用이 대체로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美國에서의 연구결과는 은행합병이 무조건 규모의 경제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규모 은행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한 費用減縮效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은행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推定模型이나 產出物의 定義 등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아직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sup>6)7)</sup>.

---

6) 證券産業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정도는 크지 않으나 規模의 經濟가 존재한다는 것이 거의 합의된 결론임. 李永琪와 崔範樹(1989)는 2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1984년에서 1988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체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 金東澈(1992)은 2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1982년에서 1992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음. 그 결과 정도는 크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박경서(1994)는 2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1987년에서 1992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제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먼저 김인기·김장희(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7개 市中銀行과 10개 地方銀行을 대상으로 1984년에서 1989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總收益을 기준으로 한 규모의 경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大型銀行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지 않았으나 小型銀行의 경우 약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승희(1992)는 18개 一般商業銀行을 대상으로 1985년에서 1990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는데, 銀行貸出은 규모의 비경제하에 있고 다른 업무들은 규모의 경제를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 업무에 걸친 규모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인기·김장희(1991), 좌승희(1992)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銀行產業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익준(1993)은 7개 市中銀行과 10개 地方銀行을 대상으로 1988년에서 1991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시험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은행의 규모의 경제가 市中銀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점포수준에서의 규모의 경제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원근(1995)은 17개 一般銀行을 대상으로 1985년에서 1992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銀行產業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계정만을 분석할 때에는 수확불변의 상태에 있지만 銀行計定과 信託計定이 통합된 모형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5% 정도의 規模의 經濟가 존재하였다.

시하였음. 다만 分析對象期間을 증권시장이 불황을 보였던 1990년에서 1992년까지로 한정할 경우 일부 대규모 증권사는 최적 생산규모를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保險產業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합의된 결론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음. 柳建植(1993)은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1989년에서 1991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나동민(1995)은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1989년에서 1993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

## 2. 範圍의 經濟

은행은 企業 및 產業關聯 情報, 대출업무 수행에 의하여 축적된 信用 分析 및 審査能力, 그리고 專門人力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금융과 소매금융,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등 서로 다른 업무에 특화하고 있는 은행들이 합병할 경우가 독립적으로 專門化하는 경우에 비해 업무의 다양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고정비 감소의 효과와 위험분산효과 및 정보효과에 의한 平均費用 減少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즉,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은행은 합병을 통한 大型化에 의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範圍의 經濟(economies of scope)는 하나의 기업이 다수생산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에 의해 이들 생산물을 각각 분리해서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보다 적을 때 나타나는 費用節約效果를 말한다.

범위의 경제도 규모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全體生産物에 대한 범위의 경제와 特定生産物에 대한 범위의 경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全體生産物에 대한 범위의 경제의 존재여부는 다음의 측정기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sup>8)</sup>.

$$SC_n = [C(y_1, 0, \dots, 0) + C(0, y_2, 0, \dots, 0) + \dots + C(0, \dots, 0, y_n) - C(y_1, y_2, \dots, y_n)] / C(y_1, y_2, \dots, y_n)$$

여기서  $SC_n > 0$ 이면,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

한편 特定生産物에 대한 범위의 경제의 존재여부는 다음의 측정기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sup>9)</sup>.

8) 여기서  $C(0, \dots, 0, y_i, 0, \dots, 0)$ 는  $y_i$  생산에 특화된 기업의 총비용을 나타냄.

9) 여기서  $y_T$ 는  $y$ 벡터의  $N$ 요소 중에서  $T$ 요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소가 0인 벡터이며,  $y_{N-T}$ 는 역으로  $T$ 요소가 전부 0인 벡터임.

$$SC_T = [C(y_T) + C(y_{N-T}) - C(y)] / C(y)$$

여기서  $SC_T > 0$ 이면,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

Buono and Eakin(1990)은 支店銀行(branch banking)<sup>10)</sup>을 허가할 한 州에 소재한 387개 은행과 單店銀行(unit banking)<sup>11)</sup>을 허가한 州에 소재한 226개 은행을 대상으로 1985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支店銀行을 허가할 한 州에 소재한 銀行에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 반면, 單店銀行을 허가한 州에 소재한 銀行에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ulley and Humphrey(1993)는 자산규모가 10억달러를 초과하는 大型銀行을 대상으로 1978년에서 1990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範圍의 經濟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美國의 연구에서는 범위의 경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아직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推定模型이나 產出物의 定義 등에 따라 범위의 경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아직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2)13)</sup>.

10) 支店銀行이란 州內에서 무제한으로 지점개설이 허용되거나 州間 相互主義를 조건으로 州間營業이 허용되는 은행을 말함.

11) 單店銀行이란 본점에 한해 銀行業務 全般의 취급이 허용되는 은행을 말함.

12) 證券産業의 경우에도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李永琪와 崔範樹(1989)는 25개 證券社를 대상으로 1984년에서 1988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음. 김동철(1992)은 2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1982년에서 1992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음. 그 결과 證券産業에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음. 박경서(1994)는 2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음.

13) 保險産業에 대한 연구에서도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柳建植(1993)은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1989년에서 1991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출업무와 증권투자업무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김인기·김장희(1991)는 7개 市中銀行과 10개 地方銀行을 대상으로 1984년에서 1989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은행은 유형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範圍의 經濟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銀行業務의 내용에 따라 범위의 경제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좌승희(1992)는 18개 一般商業銀行을 대상으로 1985년에서 1990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有價證券投資와 信託資產 및 受信 등은 범위의 경제하에 있는 반면, 銀行預金은 범위의 비경제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혁·좌승희(1996)는 1991년에서 1994년까지 영업을 한 25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大企業貸出과 外貨貸出, 大企業貸出과 家計資金貸出 등 일부 업무간에는 업무다각화가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費用競爭關係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모의합병 분석 결과도 합병조합의 일부는 비용감축이 기대되나 일부는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X-效率性

자산구성과 규모가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비용을 통제·조정하는 經營效率性의 차이에 따라 所要費用이 다를 수 있다. 효율성이 높은 은행과 낮은 은행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의 비용을 통제·조정하는 經營效率性, 즉 X-效率性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合併效果가 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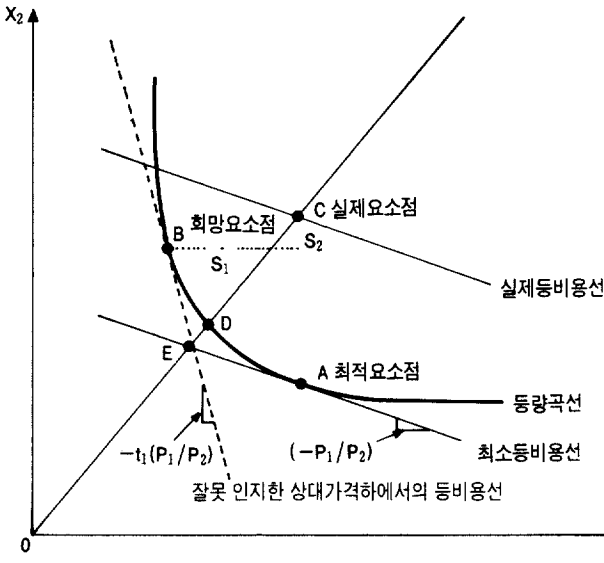
---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권영준(1994)은 6개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1981년에서 1991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 나동민(1995)은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1989년에서 1993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範圍의 經濟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X-效率性이란 투입요소 구성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配分的 效率性(allocative efficiency)과 수립된 생산계획이 낭비없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를 보여주는 技術的 效率性(technical efficiency)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Berger, Hancock, and Humphrey(1993)는 생산량이 고정되어 있고 단지 2개의 요소만이 투입된다는 단순한 가정하에서 X-效率性 개념을 [圖 II-1]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진정한 상대가격하에서의 적정요소구성 및 규모와 잘못 인지한 상대가격하에서의 요소구성 및 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配分的 非效率性(allocative inefficiency)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은행들이 관련요소의 相對價格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잘못 인지한 상대가격하에서의 최적 요소구성 및 규모와 실제 요소구성 및 규모의 차이로 인한 이익의 상실을 技術的 非效率性(technical inefficiency)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배분적 비효율성은 점 A와 점 B를 각각 통과하는 등비용선이 나타내는

[圖 II-1] 配分的 非效率性和 技術的 非效率性



비용의 차이로 측정되며, 기술적 비효율성은 점 B와 점 C를 각각 통과 하는 등비용선이 나타내는 비용의 차이로 측정된다.

Shaffer(1993)는 자산의 규모가 10억달러를 초과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비용함수 추정에 의한 模擬合併 分析을 하였다. 그 결과 경영효율성이 상위 25%에 속하는 은행이 합병 후 효율성을 원래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합병 전에 비해 비용이 21% 감소하는 반면, 經營效率性이 하위 25%에 속하는 은행이 합병하여 비효율을 전파시킬 경우에는 반대로 비용이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ger, Hancock and Humphrey(1993)는 利潤函數를 추정함으로써 配分的 非效率性과 技術的 非效率性을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미국 은행들의 비효율성이 매우 크며, 특히 기술적 비효율성의 크기가 배분적 비효율성의 크기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이 投入要素 構成과 生産計劃 樹立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립된 생산 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용면과 수익면의 효율성을 모두 측정할 경우 銀行의 規模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費用側面보다는 收益側面에서의 效率性이 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Berger and Humphrey(1992)는 자산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大型 銀行을 대상으로 1981년에서 1989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대형은행의 합병은 평균적으로 X-效率性을 5% 정도 향상시켰으나 합병으로 인한 규모의 비경제가 더 커서 실제로 費用減縮效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國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은행의 합병이 X-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X-效率性의 향상이 반드시 비용감축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는 그 수가 적으나, 대체로 은행 합병시에 X-효율성이 향상되며 費用減縮效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익준(1993)은 7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1988년에

서 1991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市中銀行間 合併時 평균적으로 19.44%, 地方銀行間 合併時 8.99%의 비용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병 후 효율성이 낮은 은행의 X-비효율성이 전체 은행에 파급될 경우 시중은행간 합병은 16.52%, 지방은행간 합병은 3.49%의 費用減少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혁·최승희(1996)는 합병 후 銀行의 X-效率性이 두 은행 중에서 효율성이 높은 은행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 費用減縮效果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여 합병은행의 경영능력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선폭은 크지 않아 은행간 X-효율성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政策的 示唆點

금융산업에 대한 規模의 經濟, 範圍의 經濟, X-效率性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증적 분석은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합병을 통해 금융산업의 效率性 增大가 기대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산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금융산업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거나 합병 후 효율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X-效率性이 전체 금융기관에 파급된다면 合併의 利點은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美國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金融產業에 規模의 經濟, 範圍의 經濟, X-效率性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합의된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產出物에 대한 定義와 推定模型, 推定技法 등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모형과 추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금융산업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X-효율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합의된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金融機關 合併이 불필요

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금융산업에 規模의 經濟, 範圍의 經濟, X-效率性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涵의된 研究결과를 도출한 후에라야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로서는 금융기관 합병의 필요성이 이론적·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해 입증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國內金融機關이 현재 처해 있는 金融市場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金融機關 合併이 왜 필요한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Ⅲ. 金融機關 合併의 現況 및 必要性

#### 1. 現況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은행간 합병이 이루어진 사례는 1976年 당시의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간의 合併이 유일하다<sup>14)</sup>. 당시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이 1 대 1로 대등합병하게 된 배경은 국제부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서울은행과 신탁업무가 강한 한국신탁은행이 합병을 통해 範圍의 經濟를 추구하는 한편, 점포 및 인원조정 등을 통해 規模의 經濟를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1981~1994년) 서울신탁은행<sup>15)</sup>의 當期純利益과 總資產當期純利益率은 다른 대형 시중은행의 60% 수준에 머물렀으며, 1人當 生産性은 90%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양 은행간의 합병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합병 후 서로 다른 企業文化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교적 보수적인 서울은행의 문화와 개방적인 한국신탁은행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둘째, 합병 후 人員減縮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합병 후 인원감축은 총인원의 5.1%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人件費의 대폭적인 절감을 이룰 수 없었다. 셋째, 중복점포의 폐쇄를 통한 支店運用費用의

---

14) 이 외에는 1991년에 한양투금이 보람은행으로 전업한 후 비은행금융기관인 금성투금과 合併한 사례가 있음. 그리고 1945년 이전 일제시대에는 몇 가지 은행간 합병사례가 있었음.

15) 서울신탁은행은 1995년 6월에 서울은행으로 改名하였음.

축소조정에 실패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서울신탁은행은 합병 이전에 비해 자원활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純利益率이 감소하는 등의 경영수지악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銀行合併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의 합병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합병 또는 타금융기관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 의해 투금사의 은행전환이 이루어지고 한양투금이 보람은행으로 전업한 후 금성투금과 합병했을 뿐, 추가적인 합병이 시도되지는 못하였다.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金融機關의 合併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이 법률이 합병의 형식에 대한 제한, 불분명한 합병 인가요건, 합병시 세제지원범위에 관한 문제 등으로 實效性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金融產業이 國際化·開放化됨에 따라 금융산업 개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合併의 實效性을 제고하기 위해서 1997년 1월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을 「金融產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로 전문개정하였다. 이 법률은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뿐 아니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등 구조개선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2. 合併의 必要性

金融自律化 및 金融市場의 對外開放으로 국내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유수 금융기관과 국내 및 해외에서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은행을 비롯한 국내금융기관이 대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實物部門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위자금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發行市場關聯 業務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어느 수준 이상의 자본규모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업무의 국제화에 필요한 適正 資本規模를 달성하고 점포망, 전산투자, 전문성 등과 관련한 취약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도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金融機關의 大型化를 달성하는 데는 資本金을 늘리는 방안도 있으나 상호 보완적이거나 동질적인 금융기관간의 합병이 효율성 증대에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한 이유를 金融產業構造의 변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國內銀行 規模의 零細性

國家別 上位 5大 市中銀行의 平均資產規模를 비교해 보면 <表 Ⅲ-1>과 같다. 우리나라 상위 5대 시중은행의 1995년 평균자산규모는 408억 6천만달러로 매우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상위 5대 시중은행의 평균자산규모는 3,313억 4천만달러로 최대 규모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상위 5대 시중은행 평균자산규모의 8.1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의 경우도 상위 5대 시중은행의 평균자산규모는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8.1배, 6.2배, 5.1배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2>를 통해 國內金融機關의 營業店數가 과포화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營業店當 人口는 6천명으로서 英國의 7만 5천명에 비해 8%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營業店當 GNP는 4천만달러로서 日本의 6억 1천만달러에 비해 6.6%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人件費와 賃貸料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영업점의 과포화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는 收益性 低下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表 Ⅲ-1〉 國家別 上位 5大 市中銀行의 平均資產規模 比較(1995年)

(單位: 億달러)

				上位 5大 市中銀行의 平均資產規模
네	덜	란	드	1,521.6
스		위	스	1,984.0
영			국	2,527.0
프		랑	스	3,299.5
스		페	인	1,050.7
이	탈	리	아	1,246.6
독			일	3,313.4
미			국	2,088.8
한			국	408.6

資料: The Banker, July 1996.

〈表 Ⅲ-2〉 金融機關의 營業店當 人口 및 GNP 比較(1992年)

(單位: 千名, 億달러)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영업점당 인구	10	75	27	16	11	40	6
영업점당 GNP	2.4	4.5	6.1	2.6	1.9	4.0	0.4

資料: 『금융포커스』, 1996. 5.

우리나라 銀行은 〈表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FDIC 가맹은행과 국내진출 외국은행지점에 비해 收益性이 낮은 편이다. 자기자본이익률은 4.19%로서 미국 FDIC 가맹은행의 13.75%와 국내진출 외국은행지점의 11.01%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은행의 總資產利益率은 0.59%로 일본 도시은행의 0.07%에 비해서는 높으나 미국 FDIC 가맹은행의 0.9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국내은행이 그나마 이 정도의 收益性을 보인 것도 國內 金融產業에 대한 진입이 엄격히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國內金融機關은 선진국의 금융기관과 비교해 볼 때 규모

〈表 Ⅲ-3〉 國內外 銀行의 收益性 比較

(單位 : %)

	국내 일반은행	미국 FDIC 가맹은행	일본 도시은행	국내진출 외국은행지점
자기자본이익률(ROE)	4.19	13.75	2.67	11.01
총자산이익률(ROA)	0.59	0.98	0.07	1.78

資料 : 한국은행, 『은행경영통계』, 1996.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Federal Reserve System*, 1996.

일본 전국은행협회연합회, 『전국은행 재무제표분석』, 1996.

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데, 향후 金融自律化와 金融市場의 開放으로 인해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될 경우 현재와 같은 규모를 가지고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國內金融機關이 선진국의 금융기관에 비해 生産性과 收益性이 크게 뒤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銀行合併이 반드시 경쟁력의 강화를 보장해 주지는 않겠지만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은행간 합병과 대형화 전략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최선의 方案이 될 것이다.

#### 나. 貸出과 관련된 信用危險의 增加

은행의 資本 및 資產規模는 기업의 성장과 資金需要의 증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1985년의 상위 5대 市中銀行의 평균자산규모는 〈表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대 企業集團의 평균자산규모의 1.32배인 6조 4,201억원이었으나, 1995년에 들어서는 상위 5대 市中銀行의 평균자산규모가 상위 5대 企業集團의 평균자산규모의 86% 수준인 21조 2,804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은행의 總與信規模에 비해 1개 기업에 대한 與信規模가 과다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의 규모가 實物企業의 資金調達을 지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영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貸出企業이 파산하면 자금을 공급한 은행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은행의 不實化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表 Ⅲ-4〉 5대 市中銀行과 5대 企業集團의 平均資產規模 推移

(單位: 億원, 倍, %)

	1985	1990	1995
5대 시중은행의 평균자산규모(A) <sup>1)</sup>	64,201	136,895 (113.2)	212,804 (55.5)
5대 기업집단의 평균자산규모(B) <sup>2)</sup>	48,810	132,696 (171.9)	248,841 (87.5)
A/B	1.32	1.03	0.86

註: 1) 5대 시중은행은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이며, 평균자산은 은행계정 총자산 기준임.

2) 5대 기업집단은 현대, 삼성, LG, 대우, 선경이며, 1995년의 평균자산규모는 1994년의 평균자산규모임.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임.

資料: 韓國銀行, 『銀行經營統計』, 1997.

韓國經濟研究院, 『1995年 30大 企業集團』, 1995.

국내은행은 대출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부실자산이 누적되면서 收益性과 健全性이 크게 악화되었다. 6대 시중은행의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sup>16)</sup>의 비율은 〈表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에 1.1%, 1996년에 1%였다. 반면 국제적인 부실여신 분류기준에 의하면 국내은행의 無收益性 與信의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총여신 대비 불건

16) 不實與信은 추정손실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여신을 합한 여신임. 推定損失은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損費處理가 불가피한 담보부족여신을 말하며, 回收疑問은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거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擔保不足與信을 말함.

전여신<sup>17)</sup>의 비율은 1995년에 6.9%, 1996년에 5.1%였으며, 총여신 대비 비정상여신<sup>18)</sup>의 비율은 1995년에 14.1%, 1996년에 14.3%였다.

이와 같이 總興信에서 부실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국내 은행이 부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不實興信의 조기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金融改革委員會를 중심으로 부실여신의 조기정리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適期是正措置制度에 의해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은행에 대해서는 합병이나 인수를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表 Ⅲ-5〉 6大市中銀行 不實興信 現況

(單位: %)

	1995	1996
부 실 여 신 비 율	1.1	1.0
불 건 전 여 신 비 율	6.9	5.1
비 정 상 여 신 비 율	14.1	14.3

註: 1. 부실여신 = 회수의문 + 추정손실

2. 불건전여신 = 부실 + 고정

3. 비정상여신 = 불건전 + 요주의

4. 비율은 총여신 대비 비율임.

資料: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 1차보고서』, 1997.

#### 다. 業務多角化 및 兼業化의 必要性

최근 세계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金融의 自律化와 금융산업의 개편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금융기관들의 業務領域에 대한 差別

17) 不健全興信은 부실여신과 固定分類興信을 합한 여신임. 고정분류여신은 6개월 이상 연체여신 중 담보가액 해당 여신이나 부도업체에 대한 여신 중 담보가액 해당 여신을 말함.

18) 非正常興信은 불건전여신과 요주의분류여신을 합한 여신임. 要注意分類興信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말함.

의 規制들이 完化·철폐되고 있다는 것이다. 預貸業務를 중심으로 하는 商業銀行業務와 尤가증권의 발행, 인수, 매매,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投資銀行業務를 하나의 은행이 동시에 수행하는 兼業主義가 일반化되고 있다. 또한 대출채권·채무의 증권화 현상이 進進되고 있고, 기업들이 直接金融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은행은 전통적인 銀行業務 외에 尤가증권의 투자 및 매매, 發行 및 인수업무, 新금융상품관련업무, 자산관리업무 등 新기업무에 진출하고 있다.

업무의 다각화와 겸업화는 危險分散效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 새로운 업무는 實물기업에 비해 流動性이 높기 때문에 銀行의 財務健全性에 심각한 影響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銀行은 새로운 업무의 위험을 분산시킬 需要가 있으며 위험관리를 위한 內部管理 및 監督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合併 및 大型化를 통하여 銀行은 전체적인 위험을 감소시켜 經營의 安定性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 라. 銀行産業의 情報·裝置産業化

은행산업이 최근 情報·裝置産業化되어 가면서 전산시스템의 重要性이 증대되고 있다. 고객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電算情報體制의 활용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銀行 競爭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전체 시중은행의 電算關聯 投資費用을 살펴보면 <表 Ⅲ-6>과 같다. 국내 전체 시중은행의 전산관련 투자비용은 5억 6,100만달러로 美國 시티은행의 15억 4,700만달러의 36.3%에 불과하며, 뱅크원과 같은 일개 地域銀行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絶對的 投資規模뿐 아니라 1人當 電算關聯 投資費用이나 總資産 對比 電算關聯 投資費用에 있어서 도 국내 전체 시중은행은 시티은행이나 뱅크원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國內銀行들도 선진국의 銀行들과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고객에 대한

〈表 III-6〉 電算關聯 投資費用의 比較

(單位 : 백만달러, 천달러, %)

	전산관련 투자액	전산관련 투자액	전산관련 투자액
		총직원	총자산
시 티 은 행	1,547	19	0.62
뱅 크 원	558	12	0.63
국 내 은 행 <sup>1)</sup>	561	6.8	0.16

註 : 1) 하나·신한·동화·동남·대동·평화은행의 1994년 비용임.

資料 : 맥킨지 컨설팅, 『국내은행 상호합병 성공전략』, 1995.

김인기·김장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진단과 전망』, 한국조세연구원, 1997, 재인용.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投資規模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전산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投資費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규모가 커야 한다. 中小規模의 銀行으로서는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투자비용과 관련된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銀行 競爭力의 결정요인으로서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시스템투자의 규모도 갈수록 커져서 막대한 技術投資의 요구를 감당하고 費用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合併을 통한 절대규모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합병 후 전산시스템이 잘 조화되지 않을 때는 엄청난 새로운 投資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통합과 관련된 위험도 상존한다.

### 3. 合併의 障礙要因

국내 은행산업에 있어서 合併을 통한 大型化 戰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障礙要因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

지 않는 한 銀行合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가. 合併推進 主體의 不在

국내은행은 同一인이 원칙적으로 議決權株式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으며, 아울러 지분 소유자들이 經營權을 행사할 수 있는 株總, 理事會 등의 제도적 장치도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合併을 추진해 나갈 만한 주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기업 또는 타금융기관과 달리 銀行의 경우 동일인은 4% 이내의 주식만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地方銀行의 경우 동일인은 의결권주식의 15%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金融專業企業家は 의결권주식의 12%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일반기업의 경우 場外市場에서 공개 매수에 의해 大量株式의 보유가 가능하며, 또한 證券去來法 第200條의 개정에 의해 1997년부터 상장 당시 10% 이상 지분소유자 이외의 투자자도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허용되는 등 合併環境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所有經營者가 아닌 銀行經營者는 합병시 중복되는 경영층의 정리에 따른 자신의 신분보장이 불확실하고 人員減縮에 따른 직원층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부담을 안고 合併을 추진할 유인이 많지 않을 것이다.

#### 나. 雇傭調整의 어려움

銀行間 合併에서 기대될 수 있는 비용절감효과는 중복되는 지점의 폐쇄를 통한 支店運用費用의 縮小과 인력의 감축을 통한 人件費의 減少 등이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의 경우 강력한 勞動組合으로 인해 합병에 따른 인원감축이 제약을 받아 이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합병을 통한 人件費 減少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인력감축이 제약이 받으면 지점통합을 통한 費用節減效果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합병 후 인력감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급여수준이 높은 은행 쪽으로 임금이 조정될 경우 人件費의 증가로 인해 收益性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을 통해 規模의 經濟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 다. 過去關係 重視의 企業文化

우리나라 企業文化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강한 一體感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보통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은행합병의 경우 短點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은행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 있어 組織構成員들이 과거의 회사관계를 현재의 새로운 회사와의 관계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상이한 조직구성원간에 融和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人員調整도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합병 후 하나의 은행으로서 원만하게 기능하기 어려워지며 단기간 내에 合併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 라. 合併關聯 制度의 未備

1991년 금융기관간 합병과 타금융업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으나, 이 法律에 의해 투금사의 은행전환이 이루어지고 한양투금이 보람은행으로 전업한 후 금성투금과 합병했을 뿐 추가적인 합병이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 법률은 合併의 形式에 대한 제한, 불분명한 合併 認可要件, 합병시 稅制支援 範圍問題 등으로 실효성이 낮았기 때문에 충분한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개선책으로 合併促進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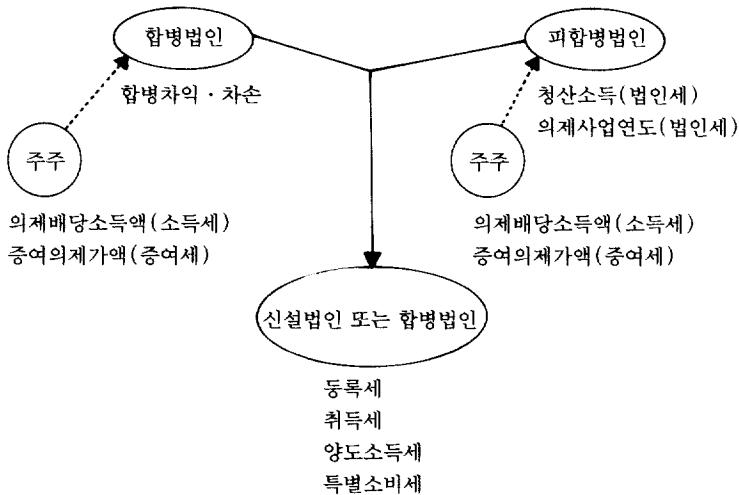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후 기존 업무의 수행을 허용하고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자 1997년 1월 「金融產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로 전문개정되었으나, 合併關聯 制度의 여러 문제점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특히 金融自律化에 따라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격화되어 不實金融機關이 발생할 경우 合併 등을 통하여 退出을 용이하게 하고 이에 따른 社會的 費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IV. 金融機關 合併關聯 稅制

金融機關의 合併에 대한 課稅는 일반기업의 합병에 대한 과세에 준한다.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 등의 개별 법에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해 상당한 稅制支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金融機關에 대해 이와 같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합병을 통해 대형화와 구조개선을 이룩함으로써 對外競爭力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金融機關 合併關聯 稅目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IV-1]과 같다.

[圖 IV-1] 金融機關 合併關聯 稅目



본장에서는 먼저 일반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租稅制度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合併과 관련하여 金融機關에만 부여하고 있는 稅制支援制度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合併關聯 稅制

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조세문제의 귀속주체로는 合併法人, 被合併法人, 合併法人의 株主, 被合併法人의 株主 등이 있다.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合併差益 및 合併差損의 처리문제, 피합병법인의 경우에는 清算所得 및 擬制事業年度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경우에는 擬制配當所得에 대한 과세문제와 贈與擬制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國稅, 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3조).

이와 같은 다양한 과세제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產業合理化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병에 대한 여러가지 租稅減免 惠澤을 부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取得稅, 登錄稅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 가. 合併法人에 대한 課稅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로는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 합병차손에 대한 과세가 있다.

#### 1) 合併差益에 대한 課稅

##### 가) 合併差益의 計算

法人稅法 第10條 第3項에서는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債務額, 그 회사의 株主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資本增加額(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신설합병의 경우)의 資本額을 초과한 때 그 초과금액

을 합병차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합병차익의 계산식〉

$$\text{합병차익} = \text{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 (\text{합병교부주식가액} + \text{합병교부금})$$

나) 合併差益의 構成要素別 課稅

合併差益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의 네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資産의 評價增으로 인한 合併差益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나머지 세 경우는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이나 출자자 지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미 과세대상이었으므로 益金不算入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① 被合併法人의 資本剩餘金으로 인한 合併差益

피합병법인이 資本剩餘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그 자본잉여금에 대하여 합병주식이나 기타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合併差益이 발생한다.

② 被合併法人의 利益剩餘金으로 인한 合併差益

피합병법인이 利益剩餘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그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合併株式이나 기타 合併交付金を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합병차익이 발생한다.

③ 被合併法人의 合併減資益으로 인한 合併差益

피합병법인의 純資産을 장부가액대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게 合併新株式을 교부하는 경우 그 차익은 합병으로 인한 減資差益으로서 합병차익이 된다.

④ 資産의 評價增으로 인한 合併差益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帳簿價額에 의하여 인수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합병차익이 발생한다. 法人稅法 第15條 第1項 第3號에서는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은 다른 합병차익과는 달리 합병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인정하여 課稅所得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 2) 合併差損에 대한 課稅

### 가) 合併差損의 計算

합병차손은 합병차익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純資產價額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株式價額과 合併交付金の 합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금액을 합병차손이라고 한다.

#### 〈합병차손의 계산식〉

$$\text{합병차손} = (\text{합병교부주식가액} + \text{합병교부금}) - \text{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 나) 合併差損의 稅務處理

合併會計準則 第6條에서는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純資產價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營業權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有償으로 취득한 부분만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그 영업권을 5년 이내의 기간에 每期 均等償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합병회계준칙 제36조와 제97조).

그러나 현행 세법에는 合併差損의 處理方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다만 法人稅法基本通則(2-10-38-16)에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營業權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地方稅

#### 가) 取得稅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形式的인 所有權 移轉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非業務用 土地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株主 또는 社員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나, 합병으로 인한 寡占株主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 나) 登錄稅

合併法人이 취득한 각종 재산권을 公簿에 등록 또는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不動產登記<sup>19)</sup>

부동산가액의 30/1000

##### ② 自動車登錄

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20/1000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50/1000

##### ③ 法人登記

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액 또는 출자증가액의 4/1000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은 건당 75,000원

---

19) 附加價値稅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간 부동산(토지 제외) 거래시에는 과세되나 합병의 경우에는 비과세됨.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하는 건당 23,000원

④ 登錄稅 重課(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의 회사가 資本 또는 出資額을 증가하는 경우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法人登記에 대해서는 정상세율의 5배를 중과함.

나. 被合併法人에 대한 課稅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가 있다.

1) 清算所得에 대한 課稅

가) 清算所得 課稅標準의 計算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청산소득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株式·出資의 價額 또는 金錢 기타 資產 價額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기資本 總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청산소득의 계산식〉

$$\text{청산소득} = (\text{합병교부주식가액} + \text{합병교부금}) - \text{자기자본 총계}$$

합병교부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현행 法人稅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抱合株式<sup>20)</sup>에 대해 합병법인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合併 交付金에서 공제하는 交付株式價額은 그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해 계산

20) 合併法人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株式 또는 出資를 의미함.

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기본통칙 5-1-8-43).

반면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清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住民稅는 합병교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3).

합병한 날 현재 내국법인에 移越缺損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손이 누적되어 피합병법인의 利益剩餘金을 초과한다면 이월결손금은 이익잉여금까지만 차감이 가능하고 미공제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43조 제5항). 또한 그 청산기간중 또는 합병 후에 國稅基本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自己資本 總額에 가산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43조 제4항).

#### 나) 抱合株式이 있는 경우 清算所得 課稅標準 計算의 特例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포함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清算所得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함주식취득가액은 合併交付金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

청산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抱合株式을 소유한 경우의 청산소득 계산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포함주식에 대하여 合併新株를 발행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포함주식취득가액을 合併交付金으로 보아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 〈청산소득의 계산식〉

$$\text{청산소득} = \text{합병교부금} - \text{자본금}$$

둘째, 포함주식에 대하여 合併新株를 발행하여 일단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당한 기일 내에 매각처분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抱合株式取得價額 중 당해 교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合併交付金으로 보

며 이때의 교부가액이란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말한다.

〈청산소득의 계산식〉

$$\text{청산소득} = \text{포합주식취득가액} - \text{포합주식액면가액}$$

다) 稅率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課稅標準金額, 즉 앞서 계산한 청산소득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6%
1억원 초과	1,6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8%

2) 擬制事業年度에 대한 課稅

內國法人이 사업연도기간중에 合併에 의하여 消滅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事業年度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법인세법 제6조 제2항). 따라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을 결산일로 하여 法人稅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의 날까지 생기는 損益에 대해서는 그 손익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2-11-3).

合併登記日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法人稅 納稅地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다. 被合併法人의 株主에 대한 課稅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로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있다.

### 1) 擬制配當所得에 대한 課稅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株式 또는 出資의 價額과 金錢의 額의 合計額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으로부터 利益을 配當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 法人株主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그리고 個人株主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5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제배당소득액의 계산식〉

$$\begin{aligned} \text{의제배당소득액} &= \text{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신설법인의 주식} \\ &\quad \text{액면가액과 금전 교부금의 합계액} \\ &\quad - \text{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end{aligned}$$

### 2) 贈與擬制에 대한 課稅

特殊關係에 있는 法人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株主<sup>21)</sup>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 합병일에 상대방의 合併當事法人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贈與稅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이때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의 발생여부는 다음의 두 계산식 중 어느 하나의 성립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이익 계산식 I〉

$$A - (B \times C) \geq A \times 30\%$$

- A :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B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C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이익 계산식 II〉

$$[A - (B \times C)] \times D \geq 1\text{억 원}$$

- A :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B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C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 D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그리고 贈與擬制價額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株式 또는 持分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지분을 포함하여 법인의 總發行株式 또는 出資持分の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

〈증여의제가액의 계산식〉

$$\text{증여의제가액} = [A - (B \times C)] \times D$$

A :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B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C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D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 라. 合併法人의 株主에 대한 課稅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로는 상속·증여세와 자기주식관련 자본 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다.

### 1) 擬制配當所得에 대한 課稅

合併法人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특정한 資本去來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주주들에게 擬制配當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한 消却益을 소각 후 2년 이내에 資本轉入할 때에는 이를 배당금의 의제로 보아 과세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無償株를 발행함에 있어서 자기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를 회사가 배정받지 않고 여타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도 그 無償株의 額面價額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 2) 贈與擬制에 대한 課稅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의 경우와 그 내용이 같다.

### 마. 産業合理化를 위한 合併에 관한 租稅支援制度

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産業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租稅減免惠澤을 부여하고 있다.

#### 1) 合理化對象企業(조감법 제39조)

합리화대상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産業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産業政策審議會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업이다.

- ① 國民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産業으로서 그 産業의 합리화 또는 진흥이 國民生活의 負擔을 현저하게 輕減할 수 있는 것
- ② 國家의 基幹産業으로서 相關産業을 진흥하게 하고 國民經濟 전반에 걸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 ③ 機資材 또는 原料를 생산공급하는 産業으로서 그 합리화 및 진흥이 生産性을 현저하게 擴大할 수 있는 것
- ④ 輸出産業 · 觀光事業 기타 外貨獲得事業으로서 그 産業의 합리화 및 진흥이 國際收支의 改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 ⑤ 農家副業 또는 農산물 · 수산물 · 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加工産業으로서 그 産業의 진흥이 農 · 漁民의 所得을 현저하게 增大시킬 수 있는 것

#### 2) 合理化 基準(조감법시행령 제36조)

합리화 기준은 産業정책심의회가 合理化對象企業의 合理化 및 振興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

- ① 生産의 專門化 또는 系列化

- ② 企業의 合併 등, 이 경우에는 積정한 生産의 규모와 方法 등을 訂하여야 한다.
- ③ 事業의 整理 또는 業種의 轉換
- ④ 施設投資(설비의 개체 또는 확장을 포함)의 適正化
- ⑤ 資本의 增加 기타 財務構造의 改善
- ⑥ 技術의 개발 및 革新
- ⑦ 資産(폐기자산 포함)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 ⑧ 債務의 免除, 保證債務의 引受 또는 辨濟의 範圍
- ⑨ 企業引受方法 및 企業引受時의 資産不足에 관한 사항
- ⑩ 事業轉換 및 이에 따른 固定資産의 처분과 事業轉換 施設投資에 관한 사항
- ⑪ 非主力業種 및 非主力企業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 ⑫ 主力業種 및 主力業種 施設投資에 관한 사항
- ⑬ 기타 合理化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稅務上 惠澤(조감법 제35조)

- ① 資産再評價時 特例 :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資産再評價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 ② 不用資産 處分時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50% 減免 : 합리화 대상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經營合理化 또는 財務構造 改善을 위하여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減免한다.
- ③ 取得稅, 登錄稅 免除 :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合併法人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 2. 金融機關 合併에 관한 稅制支援制度

### 가.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은 1991년 3월 8일 제정된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을 전문개정한 것이다. 이 법은 金融機關의 合併·轉換 또는 整理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金融業務의 效率性を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銀行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長期信用銀行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證券去來法에 의한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위탁회사, 保險業法에 의한 보험사업자, 相互信用金庫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短期金融業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與信專門金融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시설임대업자, 할부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이에 해당된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金融機關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은 금융기관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는 租稅支援에 관한 내용도 있다. 同法 第5條 第4項에서는 합병의 경우에 租稅減免規制法이나 기타 租稅의 減免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取得稅, 법인·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登錄稅,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法人稅, 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나 기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租稅減免規制法

租稅減免規制法 第40條의 2에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을 한 금융기관에 대해 特別附加稅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합병 전에 각 금융기관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 연수원, 직원복지시설 등의 자산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된 경우 合併登記日부터 5년 내에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이러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金融機關은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財政經濟院長官으로부터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을 확인받아 그 명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稅額減免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 V. 外國의 金融機關 合併關聯 課稅制度

주요 외국의 금융기관 합병관련 과세제도는 일반적인 기업합병관련 과세제도와 일치하며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과세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 외국의 企業合併關聯 課稅制度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 <表 V-1>의 내용이다. 먼저 합병을 단순한 기업의 재조직 행위로 파악하는 非課稅合併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미국은 內國稅法 第368(a)(1)(A)條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 주주지분의 연속성, 타당한 사업목적, 州法(state law)하에서 타당한 합병자격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非課稅合併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일본은 대부분의 경우에 課稅利益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가격에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효과적인 非課稅合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稅法 第210A條에도 一定한 條件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법인으로 양도되는 固定資産에서 발생하는 資本利得에 대한 控除가 규정되어 있다.

合併法人에 대한 課稅規定(合併差益)을 보면 일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합병법인이 발행한 株式의 名目價格과 피합병법인의 純帳簿價格 중 큰 쪽의 초과분에 대하여만 합병법인에 法人稅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다. 한편 독일은 합병법인이 帳簿價格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인수하도록 제한하여 合併差益의 발생을 가능하지 않게 함으로써 非課稅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또 被合併法人에 대한 課稅(清算所得)를 보면 일본은 發行株式의 名目價格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현찰로 받은 것이 피합병법인의 순장부 가격 초과시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은 청산소득의 산정시 資産의 實際價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帳簿價格대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소득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非課稅合併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합병법인의 移越缺損金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納入資本金에 상당하는 合併法人의 株式 등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한 경우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자본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損失移越의 讓渡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被合併法人 損失은 손실발생 과세연도로부터 다음 15 과세연도 이내로 이월가능하다.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는 合併法人의 課稅損失은 합병 후로 이월되고 피합병법인의 과세손실은 합병 후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미국, 일본,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租稅回避防止規定을 두고 있는데, 미국은 사업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다른 非課稅合併 條件을 충족시키는 합병일지라도 비과세합병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法人稅法 第132條의 그룹사법하에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는 獨立企業間 原則을 준수해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에 대해서는 重課稅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독일은 特別濫用防止規定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프랑스는 사업상의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어야 하고 절차상으로 완벽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의 경우 非課稅合併의 혜택이 부인된다.

합병에 대한 각종 間接稅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모든 국가가 附加價値稅를 免稅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取得稅도 免稅한다. 일본은 발행자본의 0.15%의 登錄稅와 합병계약건당 40,000엔의 印紙稅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등록세와 인지세는 면세해 주는 대신 不動產讓渡稅는 몇몇 州에서 과세한다. 또한 프랑스는 單一稅率 1,220프랑으로 등록세를 부과하며, 독일은 부동산 양도로 받은 補償對價의 가격에 기초하여 부동산양도세를 부과한다.

〈表 V - 1〉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國際比較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비과세 합병	가능 여부		내국세법 제368(a)(1)(A)조에 서 규정			세법 제210A조의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법인으로 양도되는 고정자 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 해 공제함.
	조건		i) 사업이해의 연속성 ii) 주주이해의 연속성 iii) 타당한 사업목적 iv) 주법하에서의 타당한 합병 자격	과세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가격에서 주식을 발 행함으로써 효과적인 비과 세합병이 가능함.		프랑스 법인소득세의 적용을 받 는 기업에게만 유효하며 자산양 도의 대가는 주식형태를 띠어야 함. 또한 현금지불시 주식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게 제공되어 야 함.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차익)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이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 액. 동 금액이 자산의 평가중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과세함. 합병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였으나 자 본금의 일부나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전부나 일부에 대 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않음.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 (장부가액)가 i)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명목가격 ii) 피합병법인의 순장부가 액 중 큰 쪽의 초과분에 대 하여 과세함.	합병법인은 표적기업이 최종 대 차대조표에 기록한 동일가격으 로 취득한 자산을 기록해야 함. 합병법인이 표적기업의 자산취 득으로 얻은 대차대조표상의 이 득 <sup>1)</sup> 은 비과세됨.	

〈表 V-1〉의 繼續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피합법법인에 대한 과세 (청산소득)	합법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주식, 출자금의 액면가액과 금전의 총액이 피합법법인의 합병 당시의 자본금,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 <sup>2)</sup> 함.		발행주식의 명목가격과 피합법법인의 주주가 현찰로 받은 것이 피합법법인의 순장부가격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함.	숨겨진 적립금이 이후 합병법인 단계에서 과세될 것이 확실할 때와 자산양도에 대한 보상대가가 없거나 또는 전체 보상대가가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피합법법인은 완성 대차대조표에 숨겨진 적립금의 정리시 장부가격을 사용할. 숨겨진 적립금의 정리시 일정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격 또는 보상대가의 사용가격을 기재해야만 함.	비과세합병에 해당하는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합법법인의 경상이윤에 그칠(피합법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장기자본이득도 포함됨), 그러나 비과세합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상이윤 이외에 자본이득, 적립금, 청산잉여가 과세대상에 포함됨.
비과세 적립금의 처리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합병차익은 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항이지만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비과세적립금 개념이 없음.	피합법법인의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합병법인으로 이전됨.	합법법인은 합병 전 표적기업에 적용되었던 동일한 규칙에 따라 비과세적립금을 계속 소유할 수 있음.	합병규제규정은 비과세적립금을 합병법인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	피합법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피합법법인의 납입자본금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피합법법인 주주에게 교부한 경우 이월결손금에 상당	피합법법인 손실은 손실발생 과세연도로부터 다음 15과세연도 이내로 이월가능 <sup>3)</sup> 함.	합법법인의 과세손실은 합병 후로 이월되고 피합법법인의 과세손실은 합병 후에는 고려되지 않음.	기업전환법은 손실이월의 양도를 인정하나 독일 세법은 피합법법인으로부터 이월된 손실을 양도받은 합병법인이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	합법법인의 손실은 합병 후 손실과 상쇄, 피합법법인의 손실은 합병법인으로 양도되지 않음.

〈表 V-1〉의 繼續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과실손실에 대한 처리		하는 자본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손실이월의 양도를 인정하지 않음.			지 않음. 법해석상 불가능하다는 쪽이 유리함.	
주주에 대한 과세	과세 대상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나 사원, 구성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은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보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함 <sup>4)</sup> .	합병된 법인의 주주들은 오직 지분만이 변화한 경우에는 지분의 변화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실현시키지 않음. 지분과 더불어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받는 경우에 이득이 실현됨 <sup>5)</sup> .	발행주식의 명목가격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현찰지분의 합이 피합병법인 불입자본금의 해당 주주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배당으로 보아 과세 <sup>6)</sup> 함.	차본이득은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에 대한 주식 이외의 보상대가의 비율에 상응하는 총구입원가(historic acquisition cost)나 장부가격에 대한 비율을 넘는 주식 이외의 보상대가의 초과분을 말함 <sup>7)</sup> .	비과세합병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은 인정하지 않고, 개인주주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주주의 경우 합병법인 신주자의 실질가격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장부가격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과세함.
	세율	개인주주: 의제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종합과세 법인주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익금산입		20% 원천세가 적용됨.		개인주주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시 자본이득에 대하여 19.4%로 과세함.

〈表 V-1〉의 繼續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조세회피 방지규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법인 소득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 <sup>8)</sup> 함.	사업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다른 비과세합병 조건을 충족시키는 합병일지라도 비과세합병은 불가능함.	법인세법 제132조의 그를 사법하에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는 독립기업간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세회피중기의 합병은 중과세됨.	특별납용방지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음(KStG의 8(4)조).	사업상의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어야 함. 절차상으로 완벽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의 경우 비과세합병의 혜택이 부인됨(LPF L 64조).
간접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	비과세	비과세 <sup>9)</sup>
	판매세	-	연방소득세법과 주법에 합치되는 합병은 판매세가 면제됨 <sup>10)</sup> .	-	
	등록세	과세 <sup>11)</sup>	비과세	발행자본의 0.15% <sup>12)</sup>	단일세율(1,220Ffrs)
	취득세	비과세		비과세	
	인지세		비과세	합병계약건당 40,000엔	
	부동산 양도세		몇몇 주에서 과세		부동산 양도로 받은 보상대가의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함.

註: 1) ㉠ 구입자산의 장부가격이 합병법인이 그 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합병법인이 표적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자산양도가격이 표적기업 내의 주식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 표적기업과 합병법인이 연결회계를 하고 다른 가격으로 각 기업의 장부에 기재되었을 경우

- 2) 피합병법인의 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이 병존할 때에는 이를 상계처리하고 이월결손금이 잉여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3) 이 손실은 손실기업의 최종주주들이 합병거래 후에 존속하는 기업의 fully diluted equity(non-voting, non-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제외)의 50%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을 받게 됨. 만일 많은 법인들이 합병되거나 연합되면 존속기업의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아무도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4)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의 주주나 사원, 구성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액면가액, 출자인 경우에는 출자금액으로 함.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매입수수료 등 직접비용을 의미함.
- 5) 신주의 기본가격은 구주가 양도되는 기본가격과 동일하다고 보고 과세함. 신주의 소유기간에는 포기된 주식의 소유기간도 포함됨.
- 6) 간주배당과 마찬가지로 증여의제도 성립됨. 두 경우에 모두 발행주식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과세를 피할 수 있음.
- 7) 다음 세 가지 경우는 과세대상이 됨.
  - ㉠ 개인주주가 기업 또는 개인자산으로 표적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 개인주주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 ㉢ 합병에 대해 주식 이외의 대가를 받을 경우
- 8)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합병관련 조세회피행위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님.
- 9) 기업의 총자산이 합병의 경우와 같이 다른 기업으로 양도되면 과세이연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사실상 과세가능한 활동을 수행할 경우에 가 능함.
- 10) 주·지방정부는 3~8%의 세율로 판매세를 부과하고 공정가격으로 개인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부과 안함.
- 11) 부동산등기는 부동산가액의 30/1000, 영업용 자동차등록은 자동차가액의 20/1000 그리고 비영업용 자동차등록은 자동차가액의 50/1000, 법인등기는 자본증가액 또는 출자증 가액의 4/1000를 납부해야 함.
- 12) 부동산의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의 0.6%가 부과됨.

資料 : IBFD, *The International Guide to Mergers and Acquisitions*, No. 10, June 1996.

## VI. 現行 金融機關 合併關聯 稅制의 問題點 및 改編方向

### 1. 金融機關 合併關聯 租稅政策의 基本方向

#### 가. 金融機關 合併을 위한 稅制支援의 必要性

第Ⅱ章의 文헌분석에서 金融機關의 합병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 그리고 X-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金融市場 開放과 이에 따른 金融機關간의 國際競爭 深化와 같은 커다란 變化를 임두에 둔 분석이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의 費用이나 收益性的 變化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金融機關의 大型화와 이에 따른 市場占有率의 變化 등 많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金融機關 合併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기존 연구문헌에서 간과하고 있는 金融機關의 安定性이나 國際競爭力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金融機關의 大型化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金融機關 합병을 위한 稅制支援의 必要性에 대하여 두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왜 金融機關의 합병만을 일반적인 企業合併에서 분리하여 지원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金融산업을 다른 분야에 비하여 낙후된 產業合理化 대상 분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金融機關 합병의 특별취급에 대한 근거로는 우선 우리나라 金融機關의 경쟁력이 다른 實物經濟 分野에 비하여 특히 취약하며 金融市場 開放을 목

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金融自由化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위험이 증대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過多한 投資로 인한 경제거품이 경기침체와 더불어 해소되는 과정에서 金融機關의 不實化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기관 합병을 통하여 규모를 키워서 與信關聯 危險을 줄임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부실화 추세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두번째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은 이미 커다란 합병의 물결을 거처서 大型化와 兼業化를 상당기간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合併事例가 지극히 미미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규모면에서 몹시 영세하다는 점이다. 세번째로는 금융산업이 다른 實物經濟 分野에 가지는 外部效果(externality)를 들 수 있는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실물경제 분야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행)은 경영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競爭力 強化를 위한 합병을 시도하려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 앞장서서 합병을 추진하고 민간은행이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民間銀行의 合併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세제지원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자발적 합병을 선택하기 힘든 經營構造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합병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不實債權이나 人力減縮 問題에 대한 稅制支援이 필요하다<sup>22)</sup>.

#### 나. 金融機關 合併을 위한 稅制支援의 有效性

金融機關의 合併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금융기관 합병에 대한 稅制支援이 과연 유효할 수

22) 이에 대하여는 제2절에서 상술함.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세제지원을 통한 획기적인 合併支援效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는 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성격이 대체로 기업이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정상적인 營業活動을 행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稅負擔 중의 일부를 減免하여 주는 것이며<sup>23)</sup> 정상적인 營業活動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稅負擔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관련 세제지원은 금융기관 합병에 妨害要因으로 작용할 만한 조세제도상의 요소들을 정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세제지원이라도 제도가 잘 정비되는 경우 현재보다는 어느 정도 합병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合併支援稅制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清算所得, 合併差益 등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과 관련된 세제로서 移越缺損金の 承繼問題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세제는 금융기관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의 합병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합병시 대규모의 資產讓渡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양도와 관련된 登錄稅, 取得稅 등의 地方稅制와 特別附加稅, 讓渡所得稅와 관련된 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세제를 통한 지원제도는 金融機關 合併과 관련하여서만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합병의 추진이 부진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으며, 貸損金 및 退職金 등에 대한 課稅處理와 관련된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과세제도가 잘 정비되는 경우 금융기관 합병은 상대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3)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이나 업무용 토지에 대한 讓渡差益 課稅의 移延 등은 예외임.

#### 다. WTO 規範과의 關係

金融機關의 合併에 대한 稅制上의 支援은 WTO 규범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세제지원은 WTO의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協定 第1部(일반규정) 第1條 第1項의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government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is foregone or not collected)에 해당되고,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활동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이 補助金에 대한 接近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特定性이 있다(Where the granting authority, or the legislation pursuant to which the granting authority operates, explicitly limits access to a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such subsidy shall be specific)는 第2條 第1項의 규정에 비추어 특정성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第3條 第1項에 의해 輸出補助金이나 輸入代替補助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禁止補助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第8條의 許容補助金의 定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1) 一回的인 非反復的 措置(one-time non-recurring measure)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 외 (2) 適應費用<sup>24)</sup>의 20%로 한정되어야 한다(limited to 20% of the cost of adaptation)는 조항 등에는 저촉되므로 허용보조금이라고 명백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金融機關의 合併을 통하여 금융상품 생산의 비용이 확실히 절감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補助金效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WTO 규범에 정확히 금융기관 합병에 대한 稅制支援이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이 때문에 WTO에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4) WTO 협정문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나 構造調整費用의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임.

## 라. 單純租稅回避 目的의 合併에 대한 課稅對策

합병관련 세제가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뀔 경우 기업은 單純租稅回避를 목적으로 기업의 經營合理化를 위해 그다지 필요성이 높지 않은 합병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企業合併關聯 課稅制度가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單純租稅回避 目的의 합병과 經營合理化 目的의 합병을 구분하여 세제상 차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합병을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만들기는 매우 어려우며 만들어진 기준은 필연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되어서 稅制의 透明性 觀點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稅法에 단순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후 각 개별 합병사례를 검토하여 租稅回避 目的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합병의 경우 이에 대한 합병지원세제상의 혜택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합병기업이 수년 내에 다시 企業分割을 행하는 경우는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단순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2. 現行 金融機關 合併關聯 稅制의 問題點 및 改編方向

### 가. 合併會計處理의 原則

合併의 대표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는 美國에서 발전되어 온 買收法과 持分풀링法이 있다<sup>25)</sup>. 미국에서는 1940년대 전반까지 매수법만이 사용

25) 이외에도 일본에서 발전되어 온 現物出資說과 人格合一說이 있음. 현물출자설과 인격합일설은 회계처리방법이라기보다는 법률상의 合併本質論임. 현물출자설과 인격합일설은 대립적 관계가 있으며 서로 상대방의 이론을 부정하는 관계임. 이에 반해

되었으나 1940년대 후반부터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이 혼용되었다.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이 혼용되던 초기에는 두 가지 합병회계의 관계가 모호하고 합병회계로서 통일된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실무상 큰 혼란이 있었다. 특히 持分풀링法은 회계처리나 과세문제에 있어서 합병기업에 유리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합병기업들이 이를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1950年 미국회계사회는 기업합병에 대한 회계기준의 설정을 필요로 하여 ARB(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0을 공표하였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합병회계기준의 내용을 개정하여 마침내 1970年 APB(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inion No. 16을 공표함으로써 買收法과 持分풀링法을 확실히 구분하였다<sup>26)</sup>. 이에 따르면 지분풀링법 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12가지 조건에 모두 맞는 합병이면 持分풀링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그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는 합병이면 買收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sup>27)</sup>. 즉,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병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買收法과 持分풀링法을 간략하게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買收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純資産을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取得原價를 개별자산과 부채의 公正價値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會計處理方法이다. 買收法에서는株式가 아닌 기타의 대가, 즉 현금이나 현물로 합병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다. 매수법에서는 취득원가를 개별자산과 개별부채

---

買收法과 持分풀링法은 기업결합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會計處理方法임.

- 26) APB Opinion No. 16은 持分풀링法의 구별기준이 되는 12가지 조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면 買收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持分풀링法의 구별기준은 <附錄 I>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27)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합병거래에 있어서 매수법이 적용되고 있음. 1991년에는 합병회사 중 90.9%가 매수법을 적용하였으며, 1992년에는 91.5%, 1993년에는 90.5%, 1994년에는 91.9%가 매수법을 적용하였음.

의 公正價値를 기준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일괄취득한 개별 순자산의 공정가치의 합계가 취득원가와 동일하다면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기록된다.

買收法의 會計處理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합병대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營業權으로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둘째, 취득한 순자산의 公正價値가 합병대가보다 크면 그 차액을 시장성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에서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차감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는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공정시가가 過大評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모두를 감액한 후에도 배분되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이를 負의 營業權(negative goodwill)으로 기록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환입하여야 한다. 셋째,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은 합병법인의 장부에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소멸한다.

持分풀링法은 합병당사법인의 소유주 지분이 단순하게 결합하고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위험과 상대적 지위가 변동되지 않는 合併에 적용되는 會計處理方法이다. 즉, 지분풀링법은 어느 한 기업이 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다른 기업을 일방적으로 구입하는 합병에는 적용되지 않는 회계처리방법이다.

持分풀링法 會計處理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被合併法人의 자산과 부채는 帳簿價額으로 기록한다. 둘째, 지분을 결합하기 위해서 합병법인은 반드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株式을 發行하여 교부해야 하며, 합병을 위해 발행되는 주식은 額面價額으로 기록한다. 이때 액면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이체한다. 셋째,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은 합병되는 기업들의 利益剩餘金을 그대로 引受한다. 넷째,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으며 따라서 합병 후 營業權償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持分풀링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지분풀링법은 純利益을 높게 계상할 수 있는 회계 방법이므로 이익조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분풀링법하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장부상의 금액이 일반적으로 公正價値보다 낮게 계산되기 때문에 합병 이후의 회계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함으로써 純利益을 높게 계상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순이익을 높게 계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지분풀링법하에서는 피합병법인 株主의 富가 합병법인 주주에게로 이전된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함으로써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도 未處分利益剩餘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피합병법인의 주가수익비율(price-earnings ratio)이 합병법인의 그것보다 낮은 경우 만일 합병법인의 주가수익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지분풀링법을 적용하여 株價를 상승시킬 수 있다<sup>28)</sup>.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經營者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買收法보다는 持分풀링法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자가 지분풀링법을 선호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분풀링법이 남용되는 경우 기업회계정보의 이용자인 증권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美國에서 지분풀링법의 적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합병회계처리규정인 合併會計準則의 기본입장을 살펴보자. 합병회계준칙은 買收法과 持分풀링法 중에서 어떤 회계처리방법을 따르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개별 조문의 회계처리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합병회계준칙의 기본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合併會計準則 第5條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할 때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준칙은 원칙적으로 買

28) 송인만·윤순철(1995), p. 1006.

收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에는 帳簿價額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둬으로써 持分풀링法도 수용하고 있다.

合併會計準則 第6條는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買收法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合併差益으로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日本의 現物出資說<sup>29)</sup>도 수용하고 있다.

合併會計準則 第7條는 합병회계처리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승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買收法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합병거래에 있어서는 합병차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준비금과 기타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수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합병회계처리규정인 合併會計準則은 원칙적으로 美國의 買收法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합병회계준칙은 순수한 매수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持分풀링法의 개념도 상당히 가미하고 있으며, 또한 日本의 現物出資說의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병회계처리의 실무에서는 원칙보다 예외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기본입장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업간 회계정보의 비교가 매우 어렵다. 즉, 하나의 합병에 대해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이 혼용되고 있어 회계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持分풀링法과 買收法은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합병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이므로 하나의 합병에 대해서 가장 적당한 한 가지 방법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즉, 합병당사법인의 소유주 지분이 단순하게 결합됨으로써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위험과 상대

29) 현물출자설에 대한 설명은 <부록 I> 참조.

적 지위가 변동되지 않는 합병에 대해서는 持分풀링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합병에 대해서는 買收法에 의해 회계처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合併會計準則에 持分풀링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합병의 기본조건을 명시함으로써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적용대상을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지분풀링법의 적용조건은 美國의 APB Opinion No. 16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합병당사법인의 屬性에 관한 기준이다. 합병당사법인은 다른 회사의 자회사나 사업의 일부가 아니어야 하며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持分結合에 대한 기준이다. 합병 후에 소유주 지분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지분풀링합병 후의 條件이다. 합병 후 합병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각 또는 채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합병에 관한 우리나라의 法人稅法은 合併會計準則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무처리에 있어서도 합병회계준칙과 마찬가지로 買收法, 持分풀링法 그리고 現物出資說을 혼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합병시 자산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지분풀링법의 입장에서 帳簿價額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매수법의 입장에서 公正價値로 평가할 수도 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合併差益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은 日本의 現物出資說을 따른 것이다. 합병차익의 발생원천 중에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합병감자익으로 인한 合併差益에 대해서 非課稅하는 것은 지분풀링법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또한 청산소득이 발생가능하고 과세대상이라는 점은 매수법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업권을 인정한다는 것도 매수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매수법, 지분풀링법 그리고 현물출자설을 혼용하고 있는 稅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稅法은 합병회계준칙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을 그대로 인정하여 합병의 전 과정에서 매수법 또는 지분풀링법에 의해 세무

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수법과 지분풀링법 중에서 어느 방법이 적용되든지 기업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美國의 內國歲入法(Internal Revenue Code) 第361條에 규정된 非課稅再組織(tax-free reorganization)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內國歲入法 第361條에서는 구조조정을 행하는 기업이 기본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재조직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비과세재조직의 기본적 요건은 ① 재조직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② 재조직은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않는 사업목적을 가져야 하고 ③ 재조직 전의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지분의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④ 변경된 법인형태를 기준으로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金融機關의 合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원칙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소유주 지분이 단순하게 결합하고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위험과 상대적 지위가 변동되지 않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持分풀링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합병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량 시중은행간의 합병을 들 수 있다.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의 확보가 목적인 시중은행간의 합병은 어느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은행의 소유주 지분이 단순하게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소유주 지분이 단순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합병에 대해서는 買收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합병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의 합병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주 지분이 단순하게 결합하고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위험과 상대적 지위가 변동되지 않는 합병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부실은행의 帳簿價額이 실제보다 대부분 높게 계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持分풀링法을 적용하게 되면 부실은행의 장부를 우량은행에 그대로 이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정보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또한 기업회계

정보의 이용자인 증권투자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합병은 소유주 지분이 단순하게 결합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해 買收法이 적용될 경우에는 과세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는 持分풀링法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해 조세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적용되더라도 金融機關은 金融產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과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해 합병관련 조세를 대부분 감면받을 수 있다.

#### 나. 合併差益의 處理

우리나라 稅法에서는 합병차익에 대한 개념을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債務額, 그 회사의 株主에게 지급한 金額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資本增加額(吸收合併의 경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新設合併의 경우)의 資本額을 초과한 때 그 초과금액을 合併差益으로 정의하고 있다.

合併差益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면 ① 피합병법인의 資本剩餘金으로 인한 合併差益, ② 피합병법인의 利益剩餘金으로 인한 合併差益, ③ 피합병법인의 合併減資益으로 인한 合併差益, ④ 資產의 評價增으로 인한 合併差益 등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資本剩餘金, 利益剩餘金, 合併減資益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이미 과세된 유보금이나 출자자 지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益金不算入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資產再評價法에 의한 자산재평가의 경우를 제외한 자산의 평가증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資產의 評價增으로 인한 合併差益은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합병법인들은 합병시 경제적 실질에 관계없이 帳簿價額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으로써 課稅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合併差益의 처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회계규정은 매수법이

나 지분풀링법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이 아니라 日本의 현물출자설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매수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한다면 合併差益은 시장성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非流動資産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차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는 買收法의 경우 피합병회사로부터 순자산을 일괄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取得原價主義를 존중하여 취득원가 이상의 금액을 기록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持分풀링法の 경우 자산과 부채를 합병 전 帳簿價額으로 기록하므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원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合併差益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분풀링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合併差益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買收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처리방법은 순수한 매수법의 개념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현행 合併會計準則에서는 합병차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稅法에서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이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未實現利益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sup>30)</sup>. 따라서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純資産價額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도록 한 合併會計準則 第6條의 관련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순수한 買收法의 개념에 따라 합병차익을 시장성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차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31)</sup>. 또한 資産의 評價增으로 인한 合併差益을 합병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한 法人稅法 第15條의 관련규정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30) 강동우, 「합병관련 세무사항의 검토」, 『삼일저널』, 1996 여름호, p. 38.

이만우·김용훈, 「기업합병에 대한 회계 및 조세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장협』, 1995 추계호, pp. 69~70.

31) 1997年の 稅法改正案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자산을 時價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合併差益에 대하여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 다. 合併差損과 營業權 認定問題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합병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純資產價額보다 큰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合併會計準則에서는 이를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營業權이란 일반적으로 당해 기업의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 영업상 비결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 다른 기업을 상회하는 超過收益力이라고 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병회계준칙에서는 合併差損이나 합병으로 취득한 自己株式의 處分損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영업권의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계기로 영업권을 過大計上하거나 架空計上한 후 減價償却을 통하여 비용화함으로써 조세회피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sup>32)</sup>.

이론적으로 볼 때 지분풀링법의 관점에서는 營業權이란 합병차손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숫자상의 조정의 결과이므로 이의 계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市場價格으로 자산을 인수하는 買收法의 관점에서는 영업권의 계상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合併比率 등의 산정에 있어 순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합병이 現物出資의 性格이 뚜렷한 경우(매수법)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교부 주식이액이 순자산가액보다 크면 이 초과금액의 전부를 營業權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帳簿價額으로 합병법인에게 인수될 경우에는 營業權이 전혀 인정될 필요가 없다.

---

당해 자산을 賣却하거나 減價償却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32) 우리나라의 合併會計는 지분풀링법이나 매수법으로 구분되어 일관성있게 적용되지 않고 하나의 합병에서 자산의 인수시에는 帳簿價額을 기준으로 하는 지분풀링법을, 그리고 營業權의 계상시에는 매수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음. 이우택, 『기업합병연구』, 조세통람사, 1992, p. 61.

## 라. 移越缺損金の 處理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移越缺損金으로 인한 營業權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갖고 있을 경우 합병 후에는 세무상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합병시 移越缺損金の 承繼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그룹의 A사는 事業部와 事業部를 모두 수행하는 데 비하여 B그룹의 B<sub>1</sub>사는 事業部 그리고 B<sub>2</sub>사는 事業部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예를 보자. 양 그룹에서 모두 事業部는 지속적으로 赤字를 그리고 事業部는 지속적으로 黒字를 기록한다고 하면, A그룹은 양 사업부문이 한 法人體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양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체를 구성하는 B그룹에 비하여 경제활동에서 동일한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稅負擔이 적다. 이 경우 B그룹이 B<sub>1</sub>사와 B<sub>2</sub>사를 합병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비록 租稅節減의 動機가 기업합병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적이 같은 A그룹과 B그룹에 대한 공평한 과세취급이라는 차원에서 移越缺損金の 承繼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B<sub>1</sub>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현행법상 5년 이내에 해당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利益金과 相計가 가능한데 만일 이 이익금과 상계시킬 수 있는 B<sub>1</sub>사의 권리(이월결손금)가 합병과 함께 소멸된다면 이는 합병의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衡平性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經營合理化가 목적인 합병을 기업의 재조직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면 정책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帳簿上 價格 등으로 취득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법인의 합병이 法人格의 承繼로 간주되는 경우(지분풀링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移越缺損金を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被合併法人의 稅務調整事項 중 留保事項은 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본, 독일 및 프랑스<sup>33)</sup>에서는 피

합병법인의 移越缺損金을 합병법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비해 미국에서는 被合併法人의 損失에 대하여 손실발생 과세연도로부터 다음 15과세연도까지는 移越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법에 의한 被合併法人의 資産引受에 대해서는 移越缺損金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분풀링법 방식과 매수법 방식의 會計原則이 혼재된 경우의 합병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이월결손금 승계문제에 있어서 買收法에 의한 合併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월결손금을 承繼하도록 허용시켜 줄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기업이 일관적으로 持分풀링法에 의한 합병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 租稅回避 目的의 合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合併關聯 租稅減免惠澤의 부여를 부인하는 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업목적의 뚜렷하지 않은 경우의 합병(미국, 프랑스)이나 조세회피 동기의 합병(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非課稅合併으로서의 혜택이 부인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34)</sup>. 우리나라에서도 法人稅法 第20條에 特殊關係者와의 거래에서 법인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합병과 관련하여 租稅回避 行爲가 明文化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마.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에 의한 稅制支援對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는 “이 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는 租稅減免規制法이나 기타 租稅의 減免에 관한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取得稅, 법인부동산 등의

33)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충족된 경우에는 移越缺損金의 承繼를 인정하고 있음.

34) 이에 관해서는 제 V 장에서 상술함.

등기에 따른 登錄稅,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法人稅,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 기타 租稅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위탁회사, 보험사업자, 상호신용금고,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포함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으로는 시설대여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신용카드업자 및 할부금융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열거식으로 망라되어 있다. 다만 금융기관 중 특수은행, 農·水·畜·信用協同組合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제외되어 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위의 몇몇 금융기관만을 제외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나, 새마을金庫와 協同組合은 법령의 단순화·투명성 차원에서 그리고 特殊銀行은 일반은행과의 합병이 좋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金融產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의 또 다른 문제점은 동법이 그 대상을 합병형식이 대등한 합병을 제외한 吸收合併으로 국한한다는 것이다. 新設合併의 경우는 상장요건으로 최소한 5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금융기관의 합병시 上場機關일 경우 기존 주주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 흡수합병 형식을 택할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利害對立問題를 해결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吸收合併 이외에 新設合併의 경우도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制度改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 합병과 비슷한 결과를 유발하는 營業의 讓受渡, 引受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영업 전부를 양도한 후 해산하는 사실상의 합병에 대하여도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稅制支援을 부여해야 한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營業 全部의 讓渡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同一性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상 합병과 같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가 요구되고 반대하는 주주의 株式買受請求權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합병과 영업 전부의 양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인수기업이 경영전략상 被引受企業 株主들의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합병보다는 영업 전부의 讓受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상의 합병에 대해서도 稅制誘引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바.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上的의 稅制支援의 有效性 確保**

합병에 대해 부과되는 기타 세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取得稅의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은 면세대상이나 비업무용 토지는 公示地價에 대하여 0.2%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登錄稅의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없어서 합병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의 경우 不動產價額의 3%,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自動車價額의 2%, 비영업용은 5% 그리고 資本增加額이나 出資增加額의 경우 그 금액의 0.4%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합병시 登錄稅負擔이 기업에게 상당한 짐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자본규모를 살펴볼 때 市中銀行의 경우에는 1995년말 기준 1조 3천억원에서 1조 9천억원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新設銀行의 경우 3천억원에서 1조 7천억원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資本增加額에 대한 登錄稅負擔만 보더라도 시중은행이 피합병되는 경우 52억~76억원 그리고 신설은행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12억~68억원 정도의 규모가 산출된다. 이에 대하여 「金融機關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에서는 금융기관 합병의 경우 取得稅와 登錄稅에 대하여 減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등록세와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된다<sup>35)</sup>. 따라서 금융

35) 합병시 부과되는 登錄稅와 관련하여 이는 비단 금융기관 합병시에만 감면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짐. 기업의 합병을 기업의 실체가 변하지 않는 단순한 企業支

기관이 經營合理化를 위하여 합병을 시도할 때 세부담이 걸림돌이 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金融機關 合併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租稅減免條項이 과연 얼마나 實效性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설·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登錄稅, 소멸금융기관에 대한 清算所得課稅, 소멸금융기관의 주주에 대한 擬制配當課稅 등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租稅減免規制法에는 이들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감면혜택이 부여되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 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병의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 租稅減免의 내용을 제5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한도 및 범위에 대해서는 단지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정책당국이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동법이 제공하는 稅制支援의 有效性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우선 세제지원의 적용 이전에 합병절차 등에 관한 諸般制度가 單純化되고 一般化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동법에서 규정하는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租稅減免規制法에 명확하게 그 한도와 범위를 규정하여 稅制支援의 實效性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 동법에서는 합병 및 전환에 관한 인가요건으로 “합병 및 전환이 金融效率化에 이바지할 것”과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合併 및 轉換의 效率性에 관한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는 문제와 판단 자체가 主觀的일 수 있어서 합병 및 전환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의 恣意的인 介入可能性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문의 改正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配構造의 再編成(企業再組織)이라고 본다면 이때 부과되는 등록세부담은 너무 과중한 것임.

## 사. 産業合理化에 따른 租稅特例

租稅減免規制法 第38條에서는 産業합리화에 따른 金融기관에 대한 조세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金融기관이 合理化對象企業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抵當權의 實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債券의 辨濟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讓渡差益에 대하여는 特別附加稅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金融기관 합병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金融機關 合併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는 合理化對象企業이 合理化 基準에 따라 합병한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資產再評價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資產의 取得時期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하고 있다. 또한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不用資產을 經營合理化 또는 財務構造 改善을 위하여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다만 金融기관 합병의 경우 불용자산 처분시 특별부가세의 50% 감면을 完全免稅로 확대함으로써 金融기관 합병의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아. 合併에 따른 發生費用에 대한 長期移延處理 惠澤의 賦與

金融기관 합병시 遊休人力의 調整과 함께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퇴직하게 되면 退職金 支給과 함께 큰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한두해에 처리하기 힘든 규모이므로 이를 장기간에 걸쳐서 移延處理하도록 해두면 비용이 장기간에 걸쳐서 營業利益과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인세제도에서는 缺損金에 대한 移越處理

規定을 두고 있으나 연도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비용이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충분히 상쇄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金融機關 合併의 支援과 構造調整을 위하여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長期移延處理 惠澤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Ⅶ. 要約 및 結論

합병을 통해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산업에 規模의 經濟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금융산업에 範圍의 經濟가 존재하거나 합병 후 효율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X-效率性이 전체 금융기관에 파급된다면 합병의 利點은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金融產業에 規模의 經濟, 範圍의 經濟, X-效率性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합의된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產物에 대한 定義와 推定模型, 推定技法 등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X-효율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합의된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金融機關 合併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금융산업에 規模의 經濟, 範圍의 經濟, X-效率性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의된 연구결과를 도출한 후나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로서는 금융기관 합병의 必要性이 이론적·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해 입증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國內金融機關이 현재 처해 있는 金融市場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金融機關 合併이 왜 필요한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金融自律化 및 금융시장의 對外開放으로 국내금융기관간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격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金融環境 變化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大型化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의 安全性을 높이고 效率性 및 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은행을 비롯한 국내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實物經濟部門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위자금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銀行業務의 國際化에 필요한 적정 자본규모를 달성하고 店鋪網, 電算投資, 專門性 등과 관련한 취약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도 은행간 합병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합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금융기관 소유권의 분산 및 정부의 경영통제 등으로 인해 金融機關 合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또한 국내은행에 있어 합병을 통한 銀行大型化 戰略의 필요성과 그 가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은행합병을 가로막는 우리나라 특유의 障礙要因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장애요인으로는 합병을 통한 人員減縮의 어려움, 所有經營體制의 不在, 合併誘引의 微弱, 過去關係 重視의 文化 등이 그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금융기관 합병 현황을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미국은 합병건수로는 1980년대 후반에 金融自律化 過程을 통하여 가장 많은 頻度數를 보여주었고 합병을 통한 자산취득 규모별로는 1990년대에 가장 왕성한 합병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은 이보다 이른 1970년 초반에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의 제정에 힘입어 활발한 은행합병이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 소강상태를 거친 후 1990년 초반에 다시 合併件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또 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반이 가장 합병이 왕성하였던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이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金融機關의 合併에 대한 課稅는 일반기업의 합병에 대한 과세에 준한다. 다만 「金融產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과 租稅減免規制法 등의 개별법에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해 상당한 稅制支援 惠澤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 이처럼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합병을 통해 大型化와 構造改善을 이룩함으로써 對外競爭力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금융기관 합병의 특별취급에 대한 근거로는 우선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다른 實物經濟 分野에 비하여 특히 취약하며 金融機

關의 不實化가 심각한 상황에서 金融市場 開放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합병을 통하여 규모를 키워서 여신관련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부실화 추세를 반전시키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두번째로는 美國이나 日本, 유럽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은 이미 커다란 합병의 물결을 거쳐서 大型化와 兼業化를 상당기간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合併事例가 지극히 미미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규모면에서 몹시 영세하다는 점이다. 세번째로는 금융산업이 다른 實物經濟 分野에 가지는 外部效果(externality)를 들 수 있는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실물경제 분야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행)은 經營主體가 분명하지 않아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을 시도하려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 앞장서서 합병을 추진하고 民間銀行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야 하나 민간은행의 합병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稅制支援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융기관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金融機關 合併에 대한 稅制支援이 과연 유효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세제지원을 통하여 획기적인 合併支援效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는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성격이 대체로 기업이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正常的인 營業活動을 행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稅負擔 중의 일부를 減免하여 주는 것이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稅負擔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관련 세제지원은 금융기관 합병에 妨害要因으로 작용할 만한 租稅制度上의 요소들을 정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稅制支援이라도 제도가 잘 정비되는 경우 현재보다는 어느 정도 합병에 有效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합병회계처리규정인 合併會計準則은 원칙적으로 美國의 買

收法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持分풀링法의 개념도 상당히 가미하고 있으며 日本의 現物出資說의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업합병에 관한 우리나라의 法人稅法은 合併會計準則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무처리에 있어서도 합병회계준칙과 마찬가지로 買收法, 持分풀링法 그리고 現物出資說을 혼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합병시 자산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지분풀링법의 입장에서 帳簿價額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매수법의 입장에서 公正價値로 평가할 수도 있다.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合併差益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은 日本의 現物出資說을 따른 것이다. 합병차익의 발생원천 중에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합병감자의으로 인한 合併差益에 대해서 非課稅하는 것은 지분풀링법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또한 청산소득이 발생가능하고 과세대상이라는 점은 매수법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업권을 인정한다는 것도 매수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合併會計準則과 稅法은 하나의 합병에 대해 합병의 전 과정에 대하여 買收法과 持分풀링法 가운데 가장 적합한 하나의 방법에 의해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유주 지분이 단순하게 결합되고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위험과 상대적 지위가 변동되지 않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持分풀링法을 적용하고, 소유주 지분이 단순하게 결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그 이외의 합병에 대해서는 買收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매수법 또는 지분풀링법에 의한 합병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방법에 의해 합병의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된 稅務處理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매수법을 따를 경우 合併差益은 시장성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非流動資產의 公正價値에 비례하여 차감하도록 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지분풀링법을 따를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移越缺損金の 承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합병에 대해 부과되는 기타 세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取得稅의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면세되거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登錄稅의 경우 면세규정이 없어서 합병시 등록세부담이 기업에게 상당히 큰 짐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銀行의 資本規模를 살펴보면 시중은행의 경우 1995년말 기준으로 1조 3천억원에서 1조 9천억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신설은행의 경우에는 3천억원에서 1조 7천억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資本增加額에 대한 登錄稅 負擔만 계산해 보더라도 시중은행이 피합병되는 경우 52억~76억원 그리고 신설은행이 피합병되는 경우 12억~68억원 정도의 규모가 산출된다. 이에 대하여 「金融機關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에서는 금융기관 합병의 경우 取得稅와 登錄稅에 대하여 減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등록세와 관련하여서는 稅負擔을 크게 덜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經營合理化를 목적으로 합병을 시도할 때 세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동법이 제공하는 稅制支援의 有效性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우선 세제지원의 적용 이전에 합병절차 등에 관한 諸般制度가 單純化되고 一般化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동법에서 규정하는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租稅減免規制法에 명확하게 그 限度와 範圍를 규정하여 세제지원의 實效性을 보장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합병의 장애요인으로 거론되는 不實債權問題와 人員減縮問題의 解決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합병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비용이나 遊休人力의 調整과 함께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등 큰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한두해에 처리하기 힘든 규모이므로 이를 장기간에 걸쳐 移延處理할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이 장기간에 걸쳐서 營業利益과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인세제도에서는 缺損金의 移越處理規定을 두고 있으나 연도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비용이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충분히 상쇄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金融機關 合併의 支援과 構造調整을 위하여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長期移延處理 惠澤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강동우, 「합병관련 세무사항의 검토」, 『三逸저널』, 제47권 여름호, 삼일 회계법인, 1996, pp. 37~47.
-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 2차 보고서』, 1997. 5.
- 金東源, 「銀行合併 論議의 問題點」, 『금융포럼』, 제5호, 한국금융학회, 1996. 9, p. 3.
- 김동철, 「증권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에 관한 실증분석」, 『증권조사월보』, 증권감독원, 1992. 7.
- 金炳淵 外 3人, 『外國의 銀行合併 現況』, 한국금융연구원, 1996. 9.
- 金聖在, 「保險會社의 大型化 : 展望과 課題」, 『금융연구』, 제10권 제1호 및 별책, 한국금융연구원, 1996. 8, pp. 149~210.
- 金裕燦,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정책보고서 97-02, 한국조세연구원, 1997.
- 김인기·김장희, 「한국 은행산업의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 연구」, 『금융연구』, 제5권 제2호, 한국금융연구원, 1991. 8, pp. 37~88.
- 김재봉,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3호, 보험개발원, 1995.
- 金珍洙, 「미국 은행합병의 동향과 전망」, 『재정포럼』, 제17호, 한국조세연구원, 1997. 11.
- 김철범, 「최근 일본의 M&A 추세」, 『한화경제』, 한화경제연구원, 1997. 3, pp. 13~16.
- 나동민,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 분석과 업무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95 봄.
- \_\_\_\_\_,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 분석」, 『보험

- 조사월보』, 제18권 제3호, 보험감독원, 1995. 3.
- 朴景緒, 「M&A의 經濟的 效果에 대한 考察」, 『上場協』, 秋季號, 韓國上場會社協議會, 1995, pp. 51~66.
- 梁東彧·左承喜, 「銀行合併의 費用效果 分析」, 『경제분석』, 제2권 제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6. 2, pp. 1~28.
- 梁元根, 「우리나라 은행의 합병에 관한 연구」, 『금융동향』, 제3권 제2호, 한국금융연구원, 1993. 6, pp. 2~27.
- , 「銀行合併의 動機와 銀行戰略」, 『금융연구』, 제10권 제1호 및 별책, 한국금융연구원, 1996. 8, pp. 89~115.
- , 「우리나라 은행합병의 효율성 연구 : 시뮬레이션에 의한 비용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1993. 6.
- 王充鍾, 「M&A型 直接投資의 最近 動向 및 規制措置」, 『오늘의 世界經濟』,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5. 4.
- 尹賢哲, 『合併會計와 稅務』, 韓國稅政新聞社, 1994.
- 이만우·김용훈, 「기업합병에 대한 회계 및 조세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상장협』, 1995 추계호, pp. 69~70.
- 이영기·최범수, 「증권업의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에 대한 실증분석 :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한국개발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89.
- 이우택, 『기업합병연구』, 조세통람사, 1992.
- 全周省, 『國際直接投資와 企業合併·分割』, 大韓商工會議所, 1995. 12.
- 정익준, 「은행업의 대형화와 효율성 : 비용효과를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3. 5, pp. 20~42.
- 좌승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분석과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92 여름, pp. 109~153.
- 崔運烈·禹英浩, 「證券會社의 大型化와 專門化」, 『금융연구』, 제10권 제1호 및 별책, 한국금융연구원, 1996. 8, pp. 117~148.

- 한국증권금융, 「주요국의 금융기관 합병현황」, 『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1996. 12, pp. 3~22.
- 現代經濟社會研究院, 『企業의 買收와 合併』, 1991. 12.
- 現代經濟社會研究院·每日經濟新聞社, 『글로벌시대의 기업경영효율화와 M&A』, 1996. 5.
- 洪靜熏 外 5人, 『金融產業의 構造改善方案』, 정책조사보고서 96-08, 한국금융연구원, 1996. 12.
- Akhavain, J. D., A. N. Berger and D. B. Humphrey, “The Effects of Magamergers on Efficiency and Prices : Evidence from a Bank Profit Function,”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2, No. 1, February 1997, pp. 95~139.
- Allen, R. F., “Cross Sectional Estimation of Cost Economies in Stock Property and Liability Compan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6, 1974.
- Auerbach, A. J., “The Effects of Taxation on the Merger Decision,” NBER Working Paper, No. 2192, 1987.
- Benston, G. J., W. C. Hunter and L. D. Wall, “Motivation for Bank Mergers and Acquisitions : Enhancing the Deposit Insurance Put Option versus Earnings Diversification,”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7, No. 3, August 1995, pp. 777~788.
- Berger, A. N., D. Hancock and D. B. Humphrey, “Bank efficiency derived from the profit functio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7, Nos. 2-3, April 1993, pp. 317~ 347.
- Berger, A. N., W. C. Hunter and S. G. Timm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 review and preview of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Banking and*

- Finance*, Vol. 17, Nos. 2–3, April 1993, pp. 221~249.
- Blair, R. D., J. R. Jackson and R. J. Vogel, “Economies of Scale in the Administration of Health Insura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7, 1975.
- Caves, D. W., L. R. Christensen and M. W. Trethway, “Flexible Cost Functions for Multiproduct Firm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2, No. 3, 1980.
- Caves, R. E., “Corporate Merg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o. 1484, 1990.
- CCH, *Mergers and Acquisitions in Germany*, 1995.
- Cooke, T. E., *Mergers and Acquisitions*, Oxford: Basil Blackwell, 1986.
- Fixler, D. J. and K. D. Zieschang, “An index number approach to measuring bank efficiency : An application to merger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7, Nos. 2–3, April 1993, pp. 437~450.
- Goldberg, L. G., G. A. Hanweck, M. Keenan and A. Young,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in the securities industr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5, No. 1, February 1991, pp. 91~107
- Gort, M., “An Economic Disturbance Theory of Merg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3, 1969, p. 624.
- Grace, M. F. and S. G. Timme, “An Examination of Cost Economies in the United States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9, No. 1, 1992.
- Guerinin-calvert, M. E., “Current merger policy : banking and ATM network mergers,” *The Antitrust Bulletin*, Vol. 41,

- No. 2, Summer 1996, pp. 289~321.
- Halpern, P. J. and G. F. Mathewson, "Economies of Scale in Financial Institution: A General Model Applied to Insuranc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1, No. 2, 1975.
- Hughes, A., et al., "Hypotheses about Mergers," in Dennis C. Mueller(ed.), *The Determinants and Effects of Merger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elgeschlager, Gunn and Main, Cambridge, Mass, 1980.
- IBFD, *The International Guide to Mergers and Acquisitions*, No. 10, June 1996.
- Kellner S. and F. Mathewson, "Entry, Size Distribution, Scale, and Scope Economies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Vol. 56, No. 1, 1983.
- Kuhn, R. L., *Mergers, Acquisitions, and Leveraged Buyouts*, Homewood: Dow Jones-Irwin, 1990.
- Kwast, L. M., "Panel discussion of 'US banking consolidation and efficiency—Myths and realities': Discussion comments on US banking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7, Nos. 2-3, April 1993, pp. 457~462.
- Linder, J. C. and D. B. Crane, "Bank Mergers: Integration and Profitability,"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 7, 1992, pp. 35~55.
- Mester, L. J., "Efficient Production of Financial Services: Scale and Scope Economies," *Business Review*, Jan./Feb. 1987.
- , "Efficiency in the savings and loan industry," *Journal of*

- Banking and Finance*, Vol. 17, Nos. 2–3, April 1993, pp. 267~286.
- Modén, K. M., *Tax Incentives of Corporate Merger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Ann Arbor: University-Microfilms International, 1993.
- Mueller, D., “A Theory of Conglomerate Merg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3, 1969, p. 43.
- Murray, J. D. and R. W. White, “Economies of Scale and Economies of Scope in the Multiproduct Financial Institutions: A Study of British Columbia Credit Unions,” *Journal of Finance*, Vol. 38, 1983.
- Mussati, G., *Mergers, Markets and Public Policy*,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 Nilssen, T., “On the Consistency of Merger Polic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 45, No. 1, March 1997, pp. 89~100.
- OECD, *International Mergers and Competition Policy*, 1988.
- Palia, D., “The Managerial, Regulatory, and Financial Determinants of Bank Merger Premium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 41, No. 1, March 1993, pp. 91~102.
- Panzar, J. C. and R. D. Willig, “Economies of Scale in Multi-output Produc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1, No. 3, 1977.
- Rhoades, S. A., “Competition and bank mergers: directions for analysis from available evidence,” *The Antitrust Bulletin*, Vol. 41, No. 2, Summer 1996, pp. 339~364.
- , “Efficiency effects of horizontal (in-market) bank merger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7, Nos. 2–3,

- April 1993, pp. 411~422.
- Rosenblum, R. I., "Loss Transfers," *Australian Tax Review*, Vol. 25, No. 4, December 1996, pp. 160~168.
- Rubinstein, M., "Securities Market Efficiency in an Arrow-Debreu Econom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No. 5, December 1975.
- Scholes, M. S. and M. Wolfson, "The Effects of Changes in Tax Law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Activity," *Journal of Business*, Vol. 63, No. 1, 1990, pp. 141~164.
- Schranz, M. S., "Takeovers Improve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Banking Indust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1, No. 2, 1993, pp. 299~326.
- Shaffer, S., "Can megamergers improve bank efficienc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7, Nos. 2-3, April 1993, pp. 423~436.
- Shoven, J. B. and J. Waldfogel, *Debt, Taxe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0.
- Thompson, S. C., *Reform of the Taxation of Mergers, Acquisitions, and LBOs*,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1993.
- Weiner, E., *Mergers and Acquisitions: An American Odyssey*, East Rock Institute, 1996. 6.
- Weiss, M. A., "Analysis of Productivity at the Firm Level: An Application to Life Insurer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3, No. 1, 1986.
- White, L. J., "Banking, mergers, and antitrust: historical perspectives, and the research tasks ahead," *The Antitrust Bulletin*, Vol. 41, No. 2, Summer 1996, pp. 323~337.

## 〈附錄 I〉 企業合併關聯 會計理論

### 1. 持分풀링法과 買收法

#### 가. 基本概念

기업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으로는 持分풀링法(pooling of interests method)과 買收法(purchase method)이 있다.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은 美國을 중심으로 발전된 기업합병 관련 회계이론이다. 미국의 경우 합병법인들로 하여금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合併契約의 條件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持分풀링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買收法을 적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의 會計處理節次와 結果의 차이는 합병을 보는 경제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지분풀링법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이에 實質的인 去來가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所有主 持分만이 결합되는 기업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利害關係 當事者가 결합되어 그들의 자원을 공동유지하고 하나의 기업단위로 결합된 이후에도 결합 전의 그들의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合併法人과 被合併法人의 주주의 위험과 상대적 지위는 합병 이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買收法은 합병의 본질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純資產을 일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즉, 합병법인이 企業規模를 확대하는 한 수단으로 다른 회사의 資產을 일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회사의 負債를 일괄

부담하는 경제적 거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合併去來에 대해 일반적인 순자산의 일괄 취득에 관한 회계처리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르면 일괄 구입한 순자산의 總取得原價를 결정하고, 이 원가를 취득일 현재의 개별자산 및 개별부채의 公正價値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 자산과 부채에 배분하면 된다.

## 나. 持分풀링法

지분풀링법은 合併을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買收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持分の 結合이라고 본다. 지분풀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합병은 현금이나 기타 자산의 교환에 의한 합병이 아니라 주식의 교환에 의한 합병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가진 持分の 일부를 처분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주주지분의 감소를 초래하여 상대적 지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분풀링법의 회계처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풀링법하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되는 기업들의 帳簿價額으로 기록한다. 둘째, 지분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반드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株式을 發行하여 交付해야 하며, 합병을 위해 발행되는 주식은 額面價額으로 기록한다. 이때 액면가액이 피합병법인의 資本金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피합병법인의 利益剩餘金으로부터 이체한다. 셋째,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은 합병되는 기업들의 利益剩餘金을 그대로 인수한다.

이와 같은 지분풀링법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풀링법은 純利益을 높게 계상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이므로 利益操作의 手段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분풀링법을 적용하면 합병 이후의 회계기간에 減價償却費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순이익을 높게 계상할 수 있고, 합병 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순이익을 높게 계상할 수 있다. 둘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利益

剩餘金을 승계함으로써 營業活動을 수행하지 않고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킬 수 있어 被合併法人 株主의 富가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주에게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持分풀링法の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APB Opinion No. 16은 지분풀링법의 구별기준이 되는 12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면 買收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① 결합할 각 당사회사는 자율적 관계에 있으며, 각 회사가 기업결합 계획을 수립하기 2년 전에 다른 기업의 종속회사 또는 사업부가 아니었어야 한다.
- ② 결합할 각 당사회사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각 회사는 기업결합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된 이래 다른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의 10% 이상을 관계회사주식으로 소유해서는 안된다.
- ③ 기업결합은 단일거래로 이루어지고, 기업결합계획이 시작된 지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④ 존속회사는 기업결합계획이 완료된 날 피합병법인의 '거의 대부분'의 의결권부 보통주식과 교환하여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란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의 주식을 가리킨다.
- ⑤ 당사회사는 각각 동일한 의결권부 보통주식지분의 상당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어떤 회사도 합병에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하여 각각의 주식지분을 교환·상환·분배할 수 없다.
- ⑥ 각 당사회사는 기업합병 이외의 목적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각 당사회사는 기업결합계획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⑦ 합병법인 내에서 개별 보통주주의 지분과 다른 보통주주의 지분의 비율은 합병으로 주식이 교환된 후에도 동일하여야 한다.

- ⑧ 존속회사 내의 의결권부 보통주식지분은 주주에 의해 행사될 수 있어야 하며,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의결권신탁 등에 의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 ⑨ 합병은 기업결합계획이 끝나는 날 완료되어야 하며, 주식발행 등에 관해 미완료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겠다는 제의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 ⑩ 당사회사는 합병을 성취하기 위해 발행한 모든 또는 일부의 보통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시 상환하거나 재취득하겠다고 동의해서는 안된다.
- ⑪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를 위해 다른 재무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합병으로 발행된 주식에 의해 대출보증을 하는 것이다.
- ⑫ 합병법인은 합병된 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자산의 중요부분을 처분할 계획이 없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업의 정상적 활동에 비추어 개별기업에 필요없는 중복시설 또는 과도한 시설능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허용된다.

#### 다. 買收法

買收法에서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순자산을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합병된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公正價値로 기록한다.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발행·교부하는 지분풀링법의 경우와는 달리 買收法에서는 기타의 대가, 즉 현금이나 현물로 합병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합병대가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기록한다.

매수법 회계처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합병대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營業權으로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둘째,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합병대가보다

크면 그 차액을 시장성있는 投資有價證券을 제외한 非流動資産에서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차감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는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時價가 過大評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모두를 감액한 후에도 배분되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이를 負(-)의 營業權(negative goodwill)으로 기록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환입하여야 한다. 셋째, 피합법법인의 利益剩餘金은 합병법법인의 장부에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법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소멸한다.

#### 라. 持分풀링法과 買收法의 比較

〈附表 I - 1〉 持分풀링法과 買收法의 比較

관련항목	회계처리	
	지분풀링법	매수법
기본적 관점	합병당사법인 지분의 결합	순자산의 일괄취득
발행주식의 기록 자산·부채의 평가 영업권의 인식 이익잉여금의 승계	액면가액 장부가액 인식하지 않음 승계함	공정가치 공정가치 인식함 승계하지 않음
회계변경	소급적 처리방법으로 수정	회계변경의 문제는 발생 안함
합병과 관련된 직접비	발생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합병과 관련된 간접비	발생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	발생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원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원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는 없음	감가상각 또는 상각대상자산에 배분된 장부가치 초과원가는 결합회사의 보고된 손익을 줄이기 위하여 상각

資料 : 김유찬,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이중희, 「합병회계준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M&A 법제·회계·세무 및 전략』, 대한상공회의소, 1997.

앞에서 설명한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의 특징을 비교하면 <附表 I -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지분풀링법의 경우 적용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합병의 90% 이상이 買收法에 의해 회계처리되고 있다.

## 2. 人格合一說과 現物出資說

### 가. 基本概念

일본에서는 기업합병의 본질에 관한 이론으로서 인격합일설과 현물출자설이 발전되어 왔다. 現物出資說은 미국의 매수법과 대응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고, 人格合一說은 미국의 지분풀링법과 대응되며 큰 차이는 없다.

人格合一說에 따르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로 되지만 피합병법인의 인격이 승계되어 회사에서 그대로 계속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모두가 합병으로 인해 會計處理基準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대로 회사에 이전된다.

한편 現物出資說에서는 합병을 다른 현물출자와 마찬가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그들의 자산을 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절차라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산과 부채를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회사의 장부에 기록한다. 즉, 출자받은 순자산과 그 합병대가를 公正價値로 기록하면 된다.

### 나. 人格合一說

人格合一說의 會計處理는 지분풀링법과 거의 유사하다. 합병차익은 계상되지 않고 그 대신 피합병법인의 資本剩餘金과 利益剩餘金이 승계된다.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설에서 나타나는 營業權도 계상되지 않는다.

다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되는 주식의 액면가액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자본금보다 적거나 많으면 합병과 동시에 減資 또는 增資去來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會計處理가 추가되어야 한다. 즉, 減資가 있었다면 合併減資差益을 인식하고 增資가 있었다면 合併增資差損을 계상한다.

人格合一說에 따른 회계처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帳簿價額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이연자산이나 이연부채, 모든 출당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까지도 그대로 승계한다. 둘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주식을 額面價額으로 기록한다. 이때 교부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피합병법인의 納入資本보다 적은 경우에는 合併減額差益으로 기록하는데, 이는 다른 감자차익과 동일하게 資本剩餘金으로 처리한다. 한편 교부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피합병법인의 납입자본보다 많은 경우에는 ①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②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그리고 ③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서 순서대로 차감한다. 따라서 營業權은 계상되지 않는다.

#### 다. 現物出資說

현물출자설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새로이 純資產을 出資받는 거래가 있었으므로 이를 公正價値로 평가하여 계상하게 된다. 이때 출자받은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합병대가가 높다면 그 차액을 營業權으로 계상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상각한다. 그러나 출자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取得原價가 낮은 경우 그 원가를 초과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合併差益으로 회계처리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합병이면 합병차익은 자산수증이익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주식을 발행·교부하는 합병이면 株式發行超過金이거나 아니면 자산수증이익과의 결합일 가능성이 높다.

現物出資說에 따른 회계처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합법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자산과 부채는 公正價値로 평가한다. 이는 매수법의 경우와 같다. 출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산, 예를 들면 移延資產은 출자받은 자산이 아니므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합법법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는 자산은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상한다. 자산과 함께 승계되는 부채의 경우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公正價値로 평가되므로 評價性充當金은 승계할 필요가 없다.

둘째, 取得原價가 출자받은 순자산의 公正價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營業權으로 처리한다. 이는 買收法의 경우와 동일하다. 반면 취득원가가 출자받은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合併差益으로 하여 資本剩餘金의 한 항목으로 보고한다. 이는 합병차익을 시장성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차감하는 매수법의 경우와 상이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현물출자설의 경우 출자받은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피합법법인 주주에게 교부한 대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산수증이익 또는 株式發行超過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를 資本剩餘金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合併差益이라는 계정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셋째, 합병대가로 피합법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주식은 額面價額으로 기록한다. 이는 교부된 주식의 時價로 기록하는 매수법의 경우와 다르다.

## 〈附錄 II〉 外國의 金融機關 合併 現況

### 1. 美國<sup>1)</sup>

#### 가. 銀行合併 動向

1980년대 이후 미국 은행산업의 특징은 은행수가 줄어드는 대신에 규모가 커지는 統合化(consolidation) 現象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附表 II-1〉에서 1980년대 이후 은행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銀行(bank)<sup>2)</sup>의 수는 1980년의 1만 4,407개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6년에는 9,603개로 33.3%나 감소하였다. 銀行機關(banking organization)<sup>3)</sup>도 은행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기관의 수는 1980년 1만 2,335개에서 1996년에는 7,427개로 39.8%나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중 銀行店舖(banking offices)<sup>4)</sup>의 수는 1980년 5만 2,710개에서 1995년에는 6만 8,228개로 29.4%가 증가하였다.

1) 本節은 金珍洙(1997)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2) 은행은 FDIC가맹 상업은행을 말함.

3) 은행기관은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와 은행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독립은행(independent commercial bank)을 합한 것을 말함.

4) 은행점포는 FDIC가맹 상업은행과 그 지점을 합친 것을 말함.

〈附表 II - 1〉 美國의 銀行, 銀行機關 및 銀行店鋪數 推移

(單位: 個, 名)

	은행	은행기관	은행점포	은행점포당 인구
1980	14,407	12,335	52,710	4,307
1981	14,389	12,177	54,734	4,184
1982	14,406	11,924	53,826	4,310
1983	14,405	11,669	55,109	4,246
1984	14,381	11,353	56,051	4,211
1985	14,268	11,019	57,417	4,145
1986	14,052	10,510	58,182	4,125
1987	13,542	10,099	58,821	4,114
1988	12,967	9,719	59,569	4,113
1989	12,556	9,457	61,219	4,035
1990	12,195	9,224	63,393	3,928
1991	11,791	9,010	64,681	3,896
1992	11,350	8,734	65,122	3,916
1993	10,869	8,324	63,658	4,053
1994	10,362	7,902	65,183	3,999
1995	9,856	7,574	68,228	3,861
1996 <sup>1)</sup>	9,603	7,427	n. a.	n. a.

註: 1) 1996년은 6월말 기준임.

資料: OECD, *United States Banking Consolidation: Current Trends and Issues*, DAF-FE/CMF(96)40, 1996.

다음으로 〈附表 II - 2〉와 〈附表 II - 3〉을 통해서 통합화 현상의 또 하나의 특징인 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산규모가 1억달러 미만인 小型銀行의 수는 〈附表 II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의 1만 2,729개에서 1993년에는 7,738개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자산규모가 1억달러 이상 10억달러 미만, 10억달러 이상 100억달러 미만인 中型銀行의 수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83.0%와 83.3%가 증가하였다. 또한 자산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인 大型銀行의 수는 1980년에 18개에 불과하던 것이 1993년에는 54개에 달하고 있다.

〈附表 II - 2〉 美國의 資産規模別 銀行數 推移 (經常價格 基準)

(單位 : 個)

	1억달러 미만	1억~ 10억달러	10억~ 100억달러	100억달러 이상	계
1980	12,729	1,508	174	18	14,429
1981	12,540	1,656	186	22	14,404
1982	12,358	1,821	208	22	14,409
1983	12,111	2,016	233	23	14,383
1984	11,954	2,148	253	24	14,379
1985	11,661	2,281	286	27	14,255
1986	11,267	2,424	303	33	14,027
1987	10,782	2,389	311	36	13,518
1988	10,156	2,437	315	39	12,947
1989	9,600	2,579	325	43	12,547
1990	9,146	2,682	316	49	12,193
1991	8,706	2,721	311	49	11,787
1992	8,221	2,760	321	50	11,352
1993	7,738	2,759	319	54	10,870

註 : 연도별 은행수 합계는 〈附表 II - 1〉의 통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

資料 : Daniel E. Nolle, "Banking Industry Consolidation : Past Chang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CC Working Paper 95-1, 1995.

〈附表 II - 3〉은 자산을 기준으로 한 상위 5개, 10개, 25개, 50개, 그리고 100개 은행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 25개 은행의 경우 이들 銀行의 資産規模가 전체 은행의 자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33.1% 수준에서 1996년에는 51.2%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상위 100개 은행의 경우에도 이들 은행의 자산규모가 全體 銀行의 資産規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51.4% 수준에서 1996년에는 73.5%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은행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은행의 규모가 커지는 美國 銀行産業의 통합화 현상은 銀行의 合併이 주도하고 있음을 〈附表 II - 4〉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80년에서 1995년까지의 기간 동안 1,510개의 은행

〈附表 II -3〉 美國의 上位銀行 資産占有率 推移

(單位 : %)

	상위 5	상위 10	상위 25	상위 50	상위 100
1980	13.5	21.6	33.1	41.6	51.4
1981	13.2	21.1	33.2	41.6	51.6
1982	13.4	21.8	34.2	43.0	53.6
1983	13.2	21.0	34.0	43.3	54.3
1984	13.0	20.4	33.3	43.7	55.4
1985	12.8	20.4	33.2	45.8	57.9
1986	12.7	20.2	34.1	47.3	60.4
1987	12.6	19.9	34.8	48.5	61.9
1988	12.8	20.4	35.7	51.1	64.0
1989	13.3	21.7	36.9	51.8	64.7
1990	13.1	21.8	37.8	52.7	65.4
1991	16.0	24.4	40.3	53.4	65.5
1992	17.3	25.6	41.8	55.6	67.1
1993	17.6	26.9	43.8	58.0	69.2
1994	18.2	27.9	45.7	59.9	71.3
1995	17.8	28.8	47.5	61.4	72.2
1996 <sup>1)</sup>	21.6	33.3	51.2	64.1	73.5

註 : 1) 1996년은 6월말 기준임.  
 資料 : OECD(1996).

이 倒産한 반면 3,266개의 은행이 새로 設立되었기 때문에 전체 은행수는 늘어나야 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무려 6,692건의 合併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은행수가 크게 감소하였던 것이다. 支店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1만 5천여개가 폐쇄된 반면 2만 9천여개가 새로 설립되어 전체적으로는 1만 4천여개의 지점이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은행합병 추이를 〈附表 II -5〉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銀行合併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 16년 동안 총 6,692건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반에 연평균 425건 내외이던 은행간 합병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金融自律化와 州間業務(interstate banking)

## 〈附表 II - 4〉 銀行의 進入과 退出 推移

(單位 : 個)

	FDIC에 새로 가맹한 은행	도산한 FDIC 가맹은행	합병	은행지점	
				신설	폐쇄
1980	206	10	190	2,099	267
1981	199	10	359	2,165	331
1982	316	42	420	1,574	393
1983	366	48	428	1,261	547
1984	400	79	441	1,207	868
1985	318	120	475	1,394	596
1986	248	138	573	1,246	748
1987	212	184	649	953	941
1988	228	200	468	1,502	1,042
1989	201	206	350	1,726	683
1990	175	168	366	2,719	878
1991	107	124	345	2,266	1,425
1992	73	120	401	1,642	1,656
1993	59	42	436	1,935	1,729
1994	48	13	446	2,710	1,147
1995	110	6	345	2,521	1,486
합계	3,266	1,510	6,692	28,920	14,737

資料 : OECD(1996).

領域의 擴大, 不實金融機關의 整理 등 구조재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연평균 481건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는 합병件數가 연평균 395건으로 줄어들었으나, 합병당사자 양쪽의 資産規模가 각각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형은행간 합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大型銀行間 合併 중에서 자산규모 상위 10건의 은행합병은 〈附表 II -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95년에 자산규모 1,714억달러인 Chemical Banking Corp.과 자산규모 1,140억달러인 Chase Manhattan Corp.이 합병하여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이 된 사례를 들 수 있다.

〈附表 II -5〉 美國의 銀行合併 推移

(單位 : 千, 10억달러)

	합병	대형합병		취득자산규모
			타주 은행과의 대형합병	
1980	190	0	0	10.18
1981	359	1	0	34.07
1982	420	2	0	40.87
1983	428	5	0	50.05
1984	441	6	0	69.82
1985	475	9	4	67.12
1986	573	9	6	94.41
1987	649	18	11	123.29
1988	468	14	7	87.71
1989	350	3	2	43.39
1990	366	6	2	43.47
1991	345	16	12	150.29
1992	401	23	15	165.42
1993	436	15	10	103.05
1994	446	15	11	111.76
1995	345	19	10	184.44
합계	6,692	161	90	1,379.34

註 : 大型合併은 합병당사자인 양 은행의 資産規模가 각각 10억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資料 : OECD(1996).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대형은행이 빈번히 합병을 하게 된 동기는 1980년대의 대내외적인 經營環境 惡化에 대응한 방어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많은 顧客들에게 보다 폭넓은 金融商品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과거 합병을 통해 수익성 제고에 성공한 은행의 재합병 사례와 財務構造나 收益性이 양호한 은행들의 합병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 〈附表 II - 6〉 1990年代의 大型銀行合併

(單位 : 10億달러)

	합병은행		피합병은행		거래 연도
	은행명	자산규모	은행명	자산규모	
1	Chemical Banking Corp.	171.4	Chase Manhattan Corp.	114.0	1995
2	BOA	97.2	Security Pacific Bank	83.1	1991
3	NCNB Corp.	68.5	C&S, Sovran Bank	62.9	1992
4	First Union Corp.	88.3	First Fidelity Bancorp	35.4	1995
5	First Chicago Corp.	74.2	NBD Bancorp	47.8	1995
6	Chemical Banking Corp.	69.1	Manufacturers Hanover	38.4	1991
7	Fleet Financial	48.8	Shawmut National	32.4	1995
8	PNC Bank Corp.	64.1	Midiantic Corp.	13.3	1995
9	Keycorp	32.0	Society Corp.	25.9	1993
10	National City Bank	32.1	Integra Financial Corp.	13.7	1995

資料 : *The Banker*, 1995. 7. 및 각 은행 연차보고서.

## 나. 銀行合併의 背景

## 1) 收益性 惡化에 따른 效率性 追求

1980년대에 들어와서 金融自律化 措置의 일환으로 Deposit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y Control Act가 제정되어 예금규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저축기관(thrift institutions)에 대한 업무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非銀行 金融機關은 예금과 유사하면서 수익이 높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cash management accounts)와 MMMF(money market mutual funds) 등을 개발하였다. 銀行도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위해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s)와 Super NOW계정 등 고수익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금리상품은 은행의 資金調達費用을 상승시켜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부동산관련 대출 등이 부실화됨에 따라 銀行의 經營狀態가 크게 악화

되고 부실은행과 도산은행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은행들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의해 規模의 經濟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중복되는 부서를 통합하고 점포를 정리하여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人件費를 절감함과 동시에 電算投資費用도 절감하며, 예금업무와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있어서 大型化의 이점을 누리려는 것이었다. 또한 도매금융과 소매금융,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등 서로 다른 업무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미국의 은행들은 합병을 통하여 範圍의 經濟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이는 독립적으로 전문화하는 경우에 비해 業務의 多樣化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고정비 감소의 효과와 위험분산효과 및 정보효과에 의한 平均費用의 減少를 이루려는 것이었다.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은행들이 합병 전에 비해 대체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업계에서는 주요 大型銀行의 合併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附表 II -7>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附表 II -7> 主要 銀行合併의 費用節減效果

(單位 : %)

합 병 은 행	비용절감률
BOA/Security Pacific	17
Chemical/Manufacturers Hanover	14
NCNB/C&S, Sovran	11
Fleet/Bank of New England	14
Wells Fargo/Crocker	15
First Union/Southeast	15
Bank of NY/Irving	20
Society/Ameritrust	13
Comerica/Manufacturers	14
Boatmen's/Centerre	13
평 균	14.6

註 : 비용절감률은 합병 후 總利子費用 節減率임.

資料 : First Manhattan Consulting Group 내부자료, 1994.

김병연 외 3인, 『외국의 은행합병현황』, 한국금융연구원, 1996, 재인용.

주요 대형은행의 합병 후 費用節減率은 대체로 11%에서 20%에 달하며 평균적으로는 14.6%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營業地域에 對한 規制의 緩和

미국에서는 은행의 영업지역에 대한 두 종류의 규제를 두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州間 營業(interstate banking)에 대한 規制이며, 다른 하나는 州內 支店設置(intrastate branching)에 대한 規制이다. 그러나 영업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銀行合併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먼저 주간 영업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자. 1927년의 McFadden Act는 州法(state law)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간 영업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은행은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持株會社(bank holding company)<sup>5)</sup>의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되었다. 지주회사들은 독점금지를 위한 시장점유율 제한(지역내 10% 이내) 규정을 피하기 위해 他州에 子會社를 보유하려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각 주들은 州間 相互主義를 원칙으로 주간 영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複數銀行持株會社(multi-bank holding company)의 추이를 <附表 II-8>에서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2개 이상의 州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간 영업이 사실상 확대됨에 따라 1994년에는 Riegle-Neal Interstate Banking and Branching Efficiency Act를 제정하여 他州 支店設置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9월 29일 이후 은행지주회사는 모든 주의 은행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단, 1997년 6월 1일까지

5) 은행지주회사는 2개 이상의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복수은행지주회사(multi-bank holding company)와 1개 은행만을 소유하는 단일은행지주회사(one-bank holding company)로 구분됨.

〈附表 II - 8〉 複數銀行持株會社の 會社當 子會社 銀行數 推移  
(1980~1993)

(單位: 個)

	1개 주에 자회사 보유			2개 이상의 주에 자회사 보유		
	지주 회사수	자회사 은행수	지주회사당 자회사 은행수	지주 회사수	자회사 은행수	지주회사당 자회사 은행수
1980	324	2,122	6.5	16	279	17.4
1981	355	2,300	6.5	18	277	15.4
1982	418	2,604	6.2	21	284	13.5
1983	518	2,932	5.7	33	317	9.6
1984	671	3,253	4.8	53	465	8.8
1985	806	3,359	4.2	65	720	11.1
1986	856	3,203	3.7	100	1,252	12.5
1987	837	2,916	3.5	132	1,438	10.9
1988	807	2,670	3.3	143	1,403	9.8
1989	783	2,491	3.2	160	1,403	8.8
1990	764	2,439	3.2	171	1,313	7.7
1991	722	2,220	3.1	174	1,295	7.4
1992	673	2,014	3.0	177	1,277	7.2
1993	630	1,891	3.0	190	1,424	7.5

資料: Daniel E. Nolle(1995).

는 이를 別途 企業으로 유지해야 하나 1997년 6월 1일 이후에는 타주 은행을 매수하여 이를 支店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州間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향후 單店銀行(unit banking) 및 小規模 地域銀行들은 중소규모의 지역은행으로, 中小規模의 地域銀行들은 초대형 지역은행으로, 全國銀行은 국제적 영업망을 갖춘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합병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州內 지점설치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자. 이에 대한 규제는 州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했었다. 가장 강력한 규제는 한 은행이 한 점포(office)만을 가질 수 있는 單店銀行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규제는 1991년 콜로라도주를 마지막으로 철폐되었다. 또 다른 형태의 규제는 支店の數 또는 位置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즉, 州內 어디서나 지점설치가 가능한 statewide branching과 州內의 특정지역에 한해 지점설치가 가능한 limited branching 등이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州內 支店設置에 대한 規制를 완화하는 경향을 띠었다. 그 결과 1994년말 현재 13개 주가 limited branching을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주는 모두 statewide branching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내 지점설치에 대한 규제완화로 동일 주내에 다수의 자회사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銀行持株會社는 산하은행들을 合併할 수 있게 되었다. <附表 II-8>에 나타나 있듯이 동일 주내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의 會社當 子會社 銀行數가 1980년의 6.5개에서 1993년에는 3개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 주내의 子會社가 합병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 관계에 있지 않은 은행들도 費用節減 등을 위해 상호합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된다.

## 2. 日本

1960년대 이후 金融自律化의 進展에 따라 금융구조 재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1968년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합병 및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1968~1994년중 183건의 同種金融機關間 合併이 발생하였고 동 기간중 異種金融機關間 合併도 50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이종금융기관으로의 전환은 상호은행의 보통은행으로의 전환 69건을 포함하여 74건을 기록하였다.

합병 및 전환의 진전에 따른 금융기관수의 감소는(<附表 II-10> 참조) 주로 신용금고 및 신용조합 등 中小金融機關에서 이루어졌는데, 信用金庫는 1968년 522개에서 1995년에는 416개로 106개가 줄었고 信用組合은 1968년 540개에서 1995년에는 368개로 172개가 줄었다. 한편

都市銀行은 대형합병의 결과로 3개가 감소하였고 地方銀行의 수는 이 기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다. 합병에 의한 은행수의 감소는 주로 상호은행에서 보통은행으로 전환한 제2지방은행의 吸收合併 및 對等合併에 의해 이루어졌다.

〈附表 II -9〉 日本의 1968~1994年中 合併·轉換實績

(單位: 件)

	동종합병				이종합병							합병 계	전환				
	相銀	信金	信組	계	普銀 · 相銀	普銀 · 信金	普銀 · 信組	相銀 · 信金	相銀 · 信組	信金 · 信組	계		相銀 ↓ 普銀	信金 ↓ 普銀	信組 ↓ 相銀	信組 ↓ 信金	계
1969		1	1	2						1	1	3	1				1
1970		10	3	13				1	1	5	7	20				1	1
1971		7	1	8					4	1	5	13			1		1
1972	1	13	4	18					2		2	20					
1973		2	5	7				1	5	4	10	17				2	2
1974			5	5					6		6	11					
1975		8	4	12					1		2	14					
1976		4	2	6						1	1	7					
1977		2	2	2	1						1	3					
1978		1	1	2					1	1	2	4					
1979		1	4	5						1	1	6					
1980		3	2	5							0	5					
1981		1	5	6							0	6					
1982		4	2	6							0	6					
1983			4	4							0	4					
1984			2	2						1	0	2					
1985			3	3	1						1	4	1				1
1986			2	2							1	3					
1987		1	2	3	1						1	4					
1988			4	4							0	4					
1989			12	12						1	1	13	52				52
1990		1	3	4							0	4	14				14
1991		3	6	9							0	9	1				1
1992		7	8	15		1	2				3	18	1				1
1993		4	3	7	1	1					2	9					
1994		5	4	9			2				2	11					
1995		7	5	12						1	1	13					
계	1	85	97	183	4	2	5	2	21	16	50	233	69	1	1	3	74

資料: 일본 대장성, 『은행국 금융연보』, 제44회, 평성 7년판.

## 〈附表 II - 10〉 日本 金融機關數의 變動 推移

(單位: 個)

	1968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68~1995) 증감
도 시 은 행	14	15	13	13	13	13	11	-3
지 방 은 행	63	63	63	63	64	64	64	1
제 2 지 방 은 행	74	73	72	71	69	68	65	-9
장기신용은행	3	3	3	3	3	3	3	0
신 탁 은 행	7	7	7	7	7	7	7	0
신 용 금 고	522	509	476	462	456	454	416	-106
신 용 조 합	540	538	491	483	461	407	368	-172

資料: 일본은행, 『경제통계연보』, 평성 8년판까지 각호.

## 〈附表 II - 11〉 日本 主要 金融機關 店鋪數(1995年末 基準)

(單位: 個)

	본점	지점	출장소 <sup>1)</sup>	계
국 내 은 행	164	14,955	1,556	16,675
도 시 은 행	11	2,968	480	2,459
지 방 은 행	64	7,097	819	7,970
지 방 은 행 II	65	4,443	253	4,761
신 탁 은 행	21	379	4	404
장기신용은행	3	68	0	71
신 용 금 고	416	7,944	239	8,599
상 공 조 합 중 앙 금 고	1	96	7	104
신 용 조 합	368	2,456	75	2,899
노 동 금 고	47	606	21	674
농 립 중 앙 금 고	1	30	9	40
신 농 연	47		139	186
농 협	2,413		15,112	17,525
증 권 회 사	231	2,183	275	2,689
우 편 국	1,319	18,654	4,614	24,587

註: 1) 출장소, 영업소, 간이우편국 등 포함.

資料: 일본은행, 『경제통계연보』, 평성 8년판.

〈附表 II - 12〉 日本의 主要 銀行合併 現況

1964	第 一 銀 行	朝日銀行 흡수합병
1965	住 友 銀 行	河內銀行 흡수합병
1968	三 井 銀 行	東都銀行 흡수합병
1971	第 一 銀 行	日本勸業銀行 합병, 「第一勸業은행」발족
1973	太 陽 銀 行	神戶銀行 합병, 「太陽神戶은행」발족
1986	住 友 銀 行	平和相互銀行 흡수합병
1990	太 陽 神 戶 銀 行	三井銀行 합병, 「사쿠라은행」발족
1991	協 和 銀 行	埼玉銀行 합병, 「아사히은행」발족
1991	山 陰 合 同 銀 行	후소우銀行 합병
1992	態 本 銀 行	肥後패밀리銀行 합병
1993	羽 友 銀 行	秋田아케보노銀行 합병, 「北都은행」발족
1996	三 菱 銀 行	東京銀行 합병

資料 : 한국증권금융, 「주요국의 금융기관 합병현황」, 『증권금융』, 1996. 12.

### 3. 유럽

유럽에서 銀行의 合併·買收를 통한 은행산업의 집중화는 1992년으로 예정된 유럽 金融市場의 統合이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에 절정에 다다른 후 잠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대륙계 상업은행들에 의해 영국 머천트은행이 인수되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國內銀行間 合併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다(〈附表 II - 13〉 참조).

1980년대 후반 이래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大型銀行間 合併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유럽 금융시장의 통합 이후 보다 넓어진 금융 시장에서 適正規模를 확보하고 더욱 심해질 外國銀行과의 競爭을 피하려는 국내은행들의 이해와 自國 金融産業을 保護하려는 정책당국의 이해가 일치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들간의 합병이 외국 금융기관과의 합병에 앞서 급증하게 되었다.

〈附表 II - 13〉 最近 유럽 銀行의 合併 · 買收 件數

(單位 : 件)

	합병 · 매수 건수
1987 / 1988	78
1988 / 1989	195
1989 / 1990	242
1990 / 1991	280
1991 / 1992	243
1992 / 1993	194
1993 / 1994	174

註 : 1. 각 연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의 합병 및 매수 발표건수 기준.

2. 피인수은행의 국적이 12개 EC국가인 경우.

資料 : 김병연 외 3인(1996).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국내은행간 합병이 활발히 전개된 반면 異國籍銀行間 合併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大型銀行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에는 Deutsche Bank, Crédit Lyonnais, Barclays Bank 등 대형은행들이 유럽에서의 주도권 획득을 목적으로 外國 金融機關을 경쟁적으로 매수하는 양상을 보인 바 있으며, 보다 최근에는 ING, SBC, Dresdner Bank 등 유럽대륙의 兼業型銀行들이 영국의 머천트은행을 매수하면서 業務補完性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銀行合併이 진전됨에 따라 상위은행의 순위, 전체 은행수, 은행산업의 집중도 등 은행산업의 외적인 지표도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중 지난 10년간의 유럽 上位 10大 銀行의 순위를 보면, 상위를 점하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合併 · 買受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Deutsche Bank, Crédit Lyonnais 등은 國內外 中小型銀行들의 買收를 통하여 성장하였고, HSBC Holding, CS Holding, ABN-Amro Bank 등은 주로 國內 大型銀行間 合併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附表 II - 14〉 유럽의 外國銀行間 合併의 主要 事例

(單位: 億달러)

합병은행	피합병은행	발표일	거래액
Deutsche Bank(독일)	Banca d'America d'Italia(이탈리아)	1986.12	8.50
Deutsche Bank(독일)	Banco Commercial Transatlántico(스페인)	1989. 4	1.90
Deutsche Bank(독일)	Morgan Grenfell(영국)	1989.12	14.3
Crédit Lyonnais(프랑스)	Banco Commercial Espanol(스페인)	1990.11	4.10
Barclays Bank(영국)	Merck, Finck & Co.(독일)	1990.12	3.00
Crédit Lyonnais(프랑스)	BfG Bank(독일)	1992.12	8.66
ING(네덜란드) <sup>1)</sup>	Barings(영국)	1995. 3	-
SBC(스위스)	S.G. Warburg(영국)	1995. 5	13.0
Dresdner Bank(독일)	Kleinwort Benson(영국)	1995. 6	15.5
Merrill Lynch(미국)	Smith New Court(영국)	1995. 7	8.20

註: 1) 단 1파운드의 가격으로 부실화된 Barings 매수.  
 資料: 김병연 외 3인(1996).

〈附表 II - 15〉 유럽의 上位 10大 銀行

(單位: 10億달러)

1984	자산	1995 <sup>1)</sup>	자산	1996 <sup>2)</sup>	자산
1. Banque Nationale de Paris	99.0	1. Deutsche Bank	503.4	1. Deutsche Bank	575.7
2. Crédit Agricole	92.4	2. Crédit Agricole	386.4	2. ABN-Amro Bank	444.4
3. Crédit Lyonnais	90.5	3. CS Holding	358.7	3. HSBC Holdings	405.0
4. Société Générale	87.1	4. HSBC Holdings	351.6	4. Dresdner Bank	389.6
5. Barclays Bank	85.2	5. ABN-Amro Bank	340.6	5. Banque Nationale de Paris	358.2
6. National Westminster Bank	82.7	6. Crédit Lyonnais	339.4	6. Société Générale	342.8
7. Deutsche Bank	73.4	7. Union Bank of Switzerland	336.2	7. Union Bank of Switzerland	325.1
8. Midland Bank	71.1	8. Dresdner Bank	332.9	8. Commerz Bank	320.4
9. Compagnie Financière de Paribas	56.3	9. Société Générale	326.5	9. Barclays Bank	318.6
10. Dresdner Bank	55.5	10. Banque Nationale de Paris	325.3	10. National Westminster Bank	317.4

註: 1)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자산규모 기준임.  
 2) 199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규모 기준임.  
 資料: The Banker, 1985. 9, 1996. 7.  
 The Wall Street Journal, 1997. 9. 18.

## 〈附錄Ⅲ〉 金融產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 金融產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舊 :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

제정 1991. 3. 8 법률 제4341호

전문개정 1997. 1. 13 법률 제5257호

#### 第 1 章 總 則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 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 사.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 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자.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2. ‘예금보험기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 나. 제1호 마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
  - 다. 제1호 바목 내지 아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
  - 라. 제1호 다목·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제1호 가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동호 다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재정경제원장관 등’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보험금 등의 지급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결정한 금융기관이나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와 재산의 평가 및 산정은 재정경제원장관 등이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4. ‘인수’라 함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5. ‘자금지원’이라 함은 예금보험기구가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 나.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의 매수

- 다. 부실금융기관의 채무의 인수 또는 보증
6. ‘파산참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 나.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 다. 제1호 마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
- 라. 제1호 바목 내지 아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
- 마. 제1호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감독기관
7. ‘예금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일환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8. ‘예금자’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第 2 章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

제 3 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 4 조 (인가)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상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이하

‘금융통화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합병(은행 상호간의 합병을 제외한다)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 외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③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의 효율화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④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5 조 (합병·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지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인 금융기관과 비상장법인인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장법인인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승인은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

③ 금융기관이 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1항 단서의 기간을 1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인·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 6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법·비송사건절차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금융기관이 사업연도중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 전의 금융기관의 사업연도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① 금융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인가내용에 따라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금융기관의 합병에 관한 지원)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을 정함에 있어 이 법에 의한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에는 미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①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는 행할 수 없는 업무로서 체결한 계약에 관련된 권리·업무를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6월까지는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이 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6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계약에 관련된 권리·업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승계한 업무 및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당해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수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동일인이 합병 또는 전환 당시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은행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은행법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한다.

### 第 3 章 不實金融機關의 整備

제 10 조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① 재정경제원장관 등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또는 경영개선 계획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원장관 등이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준과 조치내용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조치의 명령 등) ① 재정경제원장관 등은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자본금의 증액, 보유주식의 처분 등 경영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제2조 제1호 마목에 규정된 보험사업자의 영업양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당해 금융기관이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보험기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보전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이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

제 12 조 (자금지원의 신청)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그 부실금융기관을 관할하는 예금보험기구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자금지원의 결정) ① 예금보험기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기구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기타 자금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기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4 조 (행정처분) ① 재정경제원장관 등은 금융기관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정하는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의 건의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원장관 등은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권고 또는 알선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제1호 다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의 인가취소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행한다.
- ④ 금융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 第 4 章 金融機關의 清算 및 破産

제 15 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되는 때에는 감독기관은 상법 제531조 및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기관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거나 그 선임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6 조 (파산의 신청)** ① 재정경제원장관 등은 금융기관에 파산법 제 117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원장관 등이 아닌 감독기관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재정경제원장관 등에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제 17 조 (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파산법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법원이 파산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신고의 기간 및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9 조 (의견진술)**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제 20 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① 파산참가기관(재정경제원장관이 파산참가기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받은 때에는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산법 제202조 제1항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예금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파산참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과 열람장소를 공고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의 말일까지 예금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표의 열람의 개시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의 열람이 개시된 이후에 당해 예금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거나 기타 예금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예금자표에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 21 조 (예금자표의 제출) ① 파산참가기관은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예금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예금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 통지한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예금자의 참가)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파산참가기관은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금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때는 당해 예금자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 第 5 章 金融機關을 利用한 企業結合의 制限

제 24 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얻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第 6 章 補 則

제 25 조 (권한의 위탁)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기관 또는 예금보험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제 26 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4항,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9조 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은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게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附 則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附 則 &lt;1997. 1. 13&gt;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다른 기업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이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 4 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2 제1항 중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은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833호 부칙 제2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예금자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으로 한다.

④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5호 중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 5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附錄Ⅳ〉 合併會計準則

### 第 1 章 總 則

제 1 조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준칙은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회사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권리, 의무를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합병당사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소멸하게 되는 합병거래에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합병당사회사”라 함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를,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를 말한다.
2. “합병회사”라 함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를,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3. “피합병회사”라 함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4. “합병기일”이라 함은 합병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피합병회사의 자산 및 부채와 권리 및 의무가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합병대가가 확정되어 합병거래가 사실상 완료된 날을 말한다.
5. “합병대가”라 함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승계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회사주식의 액면총액과 교부금 등을 말한다.

제 4 조 (합병기준일과 재무제표의 작성) ① 합병회계처리의 기준일은 합병기일로 한다.

② 피합병회사는 합병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第 2 章 合併時의 會計處理

제 5 조 (합병회계처리의 원칙) ① 합병회사는 합병기일 현재의 피합병 회사 순자산을 승계하는 것을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의 가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유형고정자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공공기관이 공시한 시가표준액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한다.

### 2. 이연자산 및 이연부채

이연자산 및 이연부채는 영으로 한다. 다만, 장기선수수의 등 회사에 실질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이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3. 퇴직급여충당금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으로 한다.

### 4. 법인세채무 등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등은 그 확정액 또는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5. 기타

제1호 또는 제4호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의 가액은 합병회사가 합병계약서상에서 인수하기로 한 가액으로 한다.

제 6조 (영업권과 합병차익) ①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평가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②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합병차익으로 계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은 계상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제 7조 (잉여금 등의 처리) 합병회계처리에 있어서 피합병회사의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합병거래에 있어서는 합병차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준비금과 기업회계기준 제108조 제3호 “나”의 규정에 의한 기타법정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다.

제 8조 (상호투자주식의 회계처리) 합병기일 현재 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과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이하 “상호투자주식”이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병시 상호투자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에는 동 상호투자주식의 장부가액(전기에 동 상호투자주식을 종목별로 평가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을 합병대가로 본다.
2. 합병시 상호투자주식의 소유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동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합병당사회사의 장부가액(전기에 동 상호투자주식을 종목별로 평가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표시는 기업회계기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9조 (합병비용 등) ①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발행비는 이연

자산으로 계상한다.

② 피합병회사의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세 등과 기타 부대비용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③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비용으로 성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처리한다.

### 第3章 合併完了 後의 會計處理

제 10 조 (합병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①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제표는 당해 연도분과 직전 연도분(피합병회사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합병완료회사의 당기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기일 이전의 피합병회사 손익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자기주식 처분손익) ①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또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처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또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주식을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시가가 없는 경우)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익을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및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기업 회계기준 제9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주식처분손익과 자기주식평가손익을 상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 12 조 (우발손익 등) ① 합병기일 현재 존재하는 소송사건 등 우발사항이 합병 후에 확정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손익을 합병기

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2.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특별손익으로 처리한다.
  - ② 합병기일 이후 피합병회사와 관련하여 법인세추납액, 법인세환수액 등의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다.

#### 第 4 章 註釋事項 및 其他

제 13 조 (註釋事項)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식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1. 합병의 개요

- 가. 피합병회사의 상호, 대표이사, 영업개황 및 합병회사와의 관계 등
- 나. 합병당사회사간의 상호투자주식의 수와 투자비율
- 다.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그 직전회계연도의 피합병회사의 요약 대차대조표와 요약손익계산서
- 라. 합병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합병교부금 등 합병대가로 합병비율
- 마. 합병계약체결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및 합병기일 등
- 바.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2. 합병방침에 관한 사항

- 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 나. 피합병회사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를 승계할 때 적용한 공정가치와의 차이내역

##### 3. 합병회계처리에 관련된 사항

가. 영업권과 합병차익의 산정내역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제 14 조 (준용규정) 상법상의 영업양수,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기타 합병과 유사한 거래에는 이 준칙을 준용할 수 있다.

## 附 則

- ① (시행일) 이 준칙은 198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 예) 이 준칙은 시행일 이후 합병계약이 체결되는 합병거래부터 시행한다.
- ③ (합병을 전제로 취득한 투자주식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합병을 전제로 취득한 투자주식 및 출자금의 평가에 있어서 결산일 현재 합병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한 합병에 대한 경과조치)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의거 산업정책심의회 의결내용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 金融機關 合併에 관한 租稅政策方向

金珍洙 · 金裕燦

최근 대기업의 부도로 인해 부실화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金融機關의 合併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시급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本 報告書에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稅制支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 있다.

첫째, 현행 法人稅法에서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에 의한 세무처리방법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으므로 매수법 또는 지분풀링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한가지 방법에 의해 합병의 전과정에 걸쳐 稅務處理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매수법을 따를 경우 合併差益은 시장성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非流動資產의 公正價値에 비례하여 차감하도록 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분풀링법을 따를 경우 移越缺損金の 承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병회계준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 합병의 경우 取得稅와 登錄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租稅減免規制法에 감면의 한도, 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기관 합병시 遊休人力의 調整과 함께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큰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를 이연시켜서 장기간에 걸쳐 營業利益과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 **Financial Institution Merger and Tax Policy**

Kim, Jinsoo and Yuchan Kim

Recently,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major bad-debt problem in the financial industry that has almost crippled the entire Korean financial system and the economy. It is widely viewed that the severe nature of the problem makes it impossible to resolve without a major restructur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in particular, mergers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Thus, mergers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in the Government-led plan to restructure and rebuild healthy competitive financial industry. To provide a more merger-friendly environment and thus expedite the restructuring process, it is imperative to identify those features in the current institution that make mergers difficult and eliminate them.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tax system that is relevant to financial merger and attempts to offer tax policies that can promote mergers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allows both purchase method and pooling-of-interests method. However, the two methods are not clearly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in the current law. This could lead to confusion in application. The two methods should be more clearly defined and distinguished, so that a single method, which of the two they may prefer, is applied consistently throughout a merger process. Second, when purchase method is adopted, negative goodwill should be adjusted for the fair value of non-monetary assets before tax. Third, if pooling-of-interests

method is followed, allowance for uncollectable account should be transferable after the merger. Fourth, the current tax law rules that in case of financial merger, tax exemption can be applied to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 However, to avoid confusion in actual implementation, the relevant clauses should be stipulated more explicitly and clearly. Finally,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borne by financial institution resulting from personnel restructuring (retirement package, severance pay etc.), it is advised that financial institution should be allowed to spread the cost over a long period of time for tax purpose.